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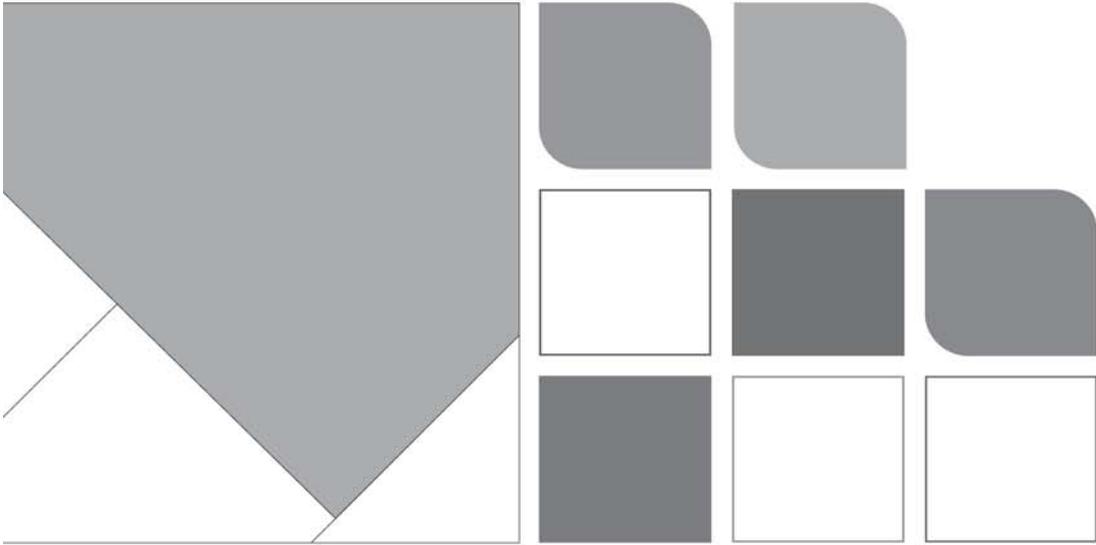
2011 정책제안서

KWPI



2011 정책제안서

KWP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 간 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 이래 여성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하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녹색성장시대 여성일자리 확대와 일·가족양립기반 강화’, ‘휴먼뉴딜을 위한 젠더관점의 사회통합기반 구축’,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중점 연구목표로 선정하고, 기본 및 수시사업 28개 과제, 수탁사업 47개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정책제안서는 2010년도에 본원에서 수행한 기본연구사업의 대표적인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성인지정책, 여성일자리, 일·가족양립, 가족정책, 다문화정책, 여성복지/아동·여성안전분야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본 자료가 각 부처의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정책제안에 대한 협의사항이나 문의사항 등은 연구진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본원에서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연구주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본원의 정책연구방향 수립과 연구주제 발굴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본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에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1년에도 본원의 연구결과가 국가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태 현

목 차

■ 성인지정책

1. 국가재정운용계획 내 여성부문 탑재 방안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3
2.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김경희 연구위원	6
3.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국민 홍보 및 작성 공무원 홍보 (동영상, 교육자료)/조선주 연구위원	12
4. 여성의 연금저축 가입 장려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제공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15
5. 원조효과성과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DAC 기본원칙과 실천과제/이선주 연구위원	20
6. 전업주부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임의가입 기준완화 및 보험료 보조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26
7. 정부가 남녀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나라살림을 운영할 때 경제적 효과 따져보면...../조선주 연구위원	32
8.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36
9. One Source for Four Groups 장애인 통계 생산 확대 /전기택 연구위원	40

■ 여성일자리

10.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제고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강화 /민무숙 선임연구위원	45
---	----

11. 경력단절 여성의 녹색관련 분야 파트너십 훈련 도입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48
12. 경제의 녹색화에 따른 여성기업주 지원 방안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50
13. 녹색 비전통적 분야의 여성취업지원 법제 마련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52
14. 녹색분야 여성과학기술인력 취업지원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54
15. 박사과정 여학생의 커리어개발 지원 /신선미 연구위원	56
16.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 일자리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58
17.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한 정책분석 심포지움 개최 /이택면 연구위원	61
18. 여성경활률 장기 추세 예측 및 중장기 여성경활률 목표치 설정 /이택면 연구위원	63
19. 여성대상 전국 종단면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이택면 연구위원	65
20.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의식 및 유권자 권리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김원홍 연구위원	67
21.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에의 여성 참여확대 방안 /정해숙 선임연구위원	73
22.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 방안 /김원홍 연구위원	78
23. 지역인재육성사업 여성 수료자 취업효과 증진 방안 /신선미 연구위원	84
24. 지역인재육성사업 여성참여율 50% 목표 설정 /신선미 연구위원	88

■ 일·가족양립

25. 가족친화기업 인증심사시 직장보육시설 가점부여 /홍승아 연구위원	95
26.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과제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97
27. 돌봄 공유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정책 방향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100
28. 보육비지원과 보육시설평가제도의 연계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제고 /홍승아 연구위원	103
29. 보육비지원정책의 취업부모조항 확대 및 서비스이용 강화 /홍승아 연구위원	105
30. 보육예산의 지역 여성 경제활동 촉진 효과 제고 방안 /이택면 연구위원	107
31. 산전후휴가 실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110
32.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113
33. 일가정양립의 생활화와 저출산 /김혜영 선임연구위원	116
34. 자녀간병휴가제도의 도입 /홍승아 연구위원	119
35. 장시간근로 야근문화 개선에 정책적 역량 선택과 집중 (「가족친화사회 환경조성」 및 「일가정양립 촉진」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안상수 연구위원	121
36. 직장보육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125
37. 취업부모의 부모시간을 위한 근로시간과 조직문화 지원 /홍승아 연구위원	130

■ 가족정책

- 38.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제도화 방안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135
- 39. 세대간 이해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자원봉사활동에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프로그램 적용)/이수연 선임연구위원 138
- 40. 여성 돌봄자와 여성 노인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강화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140
- 41. 행정적 노인연령 조정 (자활근로 연령/연금 수급 연령 상향화를
중심으로)/이수연 선임연구위원 143

■ 다문화정책

- 42.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 역량 기반 활동 활성화
/김이선 연구위원 149
- 43.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문화 역량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강화
/김이선 연구위원 154
- 44.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 기초 확립
/김이선 연구위원 161
- 45.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김이선 연구위원 167
- 46. 다문화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적합한 언어·문화자원 개발 방향 설정
/김이선 연구위원 170
- 47. 언어·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사회 환경 촉진
/김이선 연구위원 173

■ 여성복지/아동·여성 안전

- 48. 아동성폭력 예방 관련 지역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여아 안전 강화
/이미정 연구위원 179
- 49. 우울증 검진 확대 방안
/김영택 연구위원 183
- 50. 취약계층 가족의 부부관계 증진과 빈곤 되물림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수립/변화순 선임연구위원 186
- 51.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 여성의 가족·문화, 노동, 복지, 건강과
사회안전망 개선방안/변화순 선임연구위원 192
- 52.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과 건강안전망 개선방안
/김영택 연구위원 198
- 53. M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ODA기여 부문 개발: 모자보건
/이선주 연구위원 203

■ 2010년도 연구과제명

- 1. 2010년 기본연구과제 목록 209
- 2. 2010년 수탁연구과제 목록 218

성인지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 내 여성부문 탑재 방안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1, e-mail : youngkk@kwidmail.re.kr

요 약

성인지예산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세부사업 수준의 단년도 예산분석을 넘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즉 여성 관련 예산사업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틀 안에 탑재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성평등한 자원 배분 효과와 이를 통한 단년도 성인지적 예산집행을 기대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수립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으로 당해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며, 이는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단년도 예산운용의 단점을 보완하고 국가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단년도 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따라 편성·운영되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8~2012년 계획의 평가, 재정운용의 여건과 재정운용의 방향, 12개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재정관리시스템의 개선으로 구성됨.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부문별 중기계획과 세출을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이므로 성평등정책 관련 중기계획을 예산에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주요 관심과 논의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면서 세부사업 중심의 단년도 예산
분석에 제한되어 사업수혜자의 성별 분석에 집중하게 되는 한계가 있음.
 - 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세부사업 수준의 단년도
예산분석 뿐 아니라 부처별, 사업별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중기계획인 국가재정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이
필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제1안
 -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분야별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
함. 12개 분야별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에 성평등 이슈를 추가함.
 - 이로부터 도출되는 “중점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제안 시 여성 관련
예산 사업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으며,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에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한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사
업의 성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음.
 - 각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여성 관련 예산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성 관련 예산의 범위 등 작성의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제2안

- 현재의 R&D 분야와 같이 여성 관련 예산을 하나의 분야로 독립시키는 방안임. 각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 관련 예산을 통합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성평등 이슈의 우선순위에 따라 여성 관련 예산 사업에 대한 자원배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임.
- 제2안은 각 분야에 숨어 있는 여성 관련 예산을 통합하여 분석하고 그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성평등 이슈 안에서의 우선순위나 정부 총지출에서 여성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각 분야별로 이질적인 성평등 이슈와 여성 관련 예산 사업들을 통합하는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3. 정책효과

- 국가재정운용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성평등한 자원배분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인지예산서를 통한 단년도 예산집행의 성인지적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체계에 예산과정으로서의 성인지예산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논의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음.

-
-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재정정책과)
 -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과)
-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수행과제명 : 성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과제책임자 : 김경희 연구위원

Tel : 02-3156-7187, e-mail : kh99kim@kwidimail.re.kr

요약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지난 5년간 수행되면서 참여기관 및 대상과제 수 모두가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대상과제의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일반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할 가능성을 높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 성과관리와 정책환류를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의 측면, 수행의 측면,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성과과와 함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1. 정책의 필요성

성주류화의 목표는 여성정책을 뛰어 넘어 일반정책까지도 성 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부당함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성별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이 남녀 불평등하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있음.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도구임. 우리나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있음.

지난 5년간 성별영향평가는 참여기관 및 대상과제 수 모두가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대상과제의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일반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할 가능성을 높였음. 하지만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 및 정책환류에 대한 점검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실정임.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환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앙기관의 참여가 낮고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제도의 성과관리와 정책 환류를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실행되어 왔던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인프라 구축의 측면, 수행의 측면, 성과관리의 측면으로 구분한 다음 그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였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성별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의 측면

▶ 법체계의 개선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등

지난 5년간 이루어낸 성별영향평가의 양적 성장에 이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 법에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대상, 평가대상 정책 및 추진주체, 추진절차, 담당 공무원의 교육,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운영,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에 관한 세부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추진체계의 개선 : 과제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등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제도개선안을 환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담당기구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어야 함. 지자체 사업의 대부분이 국고지원사업으로 중앙기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앙기관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임. 성차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부

차간 협력과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의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신설되어야 함. 특히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을 연계시켜 성주류화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중앙기관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과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것은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 왜냐하면 지자체가 제시한 제도개선안이 환류로 연결되려면 중앙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임. 또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산규모가 크고 일반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중앙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어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 무엇보다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이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관심이 높아져야 하며,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담당기구를 신설해서 기관별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인원을 점검해야 할 것임.

▶ 성별영향평가 예산·홍보 등 지원 확대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센터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예산 증가가 거의 없음. 성별영향평가센터가 16개 시도별로 적어도 1개 이상 운영되면서 성별영향평가 관련사업을 내실있게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지원예산을 보다 확충하고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해야 할 것임.

□ 성별영향평가 수행의 측면

▶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의 효율성 제고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이 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기관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과제선정위원회(여성정책관련 위원회 등)를 제시해야 할 것임.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사례를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포함시켜 과제선정이 기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제선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컨설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활용한 보고서 양식 개선 등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성별영향평가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음. 이 매뉴얼은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담당공무원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분야의 특성은 고려되어 있지 않음. 지역개발분야, 교통분야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사전평가 위주로 분석되어야 함. 반면에 복지분야, 교육분야에서 선정된 대상과제의 경우 사전사후 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및 매뉴얼은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분야별로 세분화해서 개발되어야 할 것임.

▶ 환류실적 보고서의 양식 개편 등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이 제출한 환류실적 보고서에는 다양한 제도개선 사례가 제시되었으나 이것이 실제로 환류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정책환류를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류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음. 또한 현재의 환류실적 보고서는 제도개선의 진행도와 추진기구, 추진과정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움. 향후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평가위원회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환류를 점검하는지 여부, 환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는지 여부, 제도개선을 위해 예산에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환류실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성별영향평가 성과관리의 측면

▶ 성과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확대

중앙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활성화시키고 이 제도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성별영향평가 담당기구가 성인지 감사(gender audit)를 수행해야 할 것임. 앞서 설명한 대로 성인지 감사는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한 성주류화 정책의 책임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별도의 기구신설이 어렵다면 여성정책조정회의(가칭)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와 제도운영의 전반을 성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환류 모니터링 : 거버넌스 실천

최근 국내에서는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성 주류화 시행과정에서 거버넌스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성주류화 실행네트워크(Regional Gender Mainstreaming Practice Network: RGPN)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 네트워크는 지역 연구기관(성별영향평가센터)이 주체가 되어 젠더 전문가, 여성부서 공무원, 의원, NGO활동가, 언론 등 성 주류화 실행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임.

3. 정책효과

본 연구를 통해서 기대되는 정책효과는 첫째,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홍보, 확대하는 것임.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주체를 검토하고 실행주체간의 협력체계, 정책환류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셋째, 제도 개선 및 정책환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

을 제시하는 것임. 넷째, 성주류화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실행주체간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제시하여 성주류화 관련제도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는 것임. 다섯째,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임.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국민 홍보 및 작성 공무원 홍보 (동영상, 교육자료)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추정: CVM을 이용한 실증분석
과제책임자 : 조선주 연구위원 Tel : 02-3156-7109, e-mail : sjcho@kwidimail.re.kr

요 약

성별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일 수 있게 나라살림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고, 공무원들에게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성별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일 수 있게 나라살림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함. 본 조사 결과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중하게 활용하기 위함임.

2. 정책의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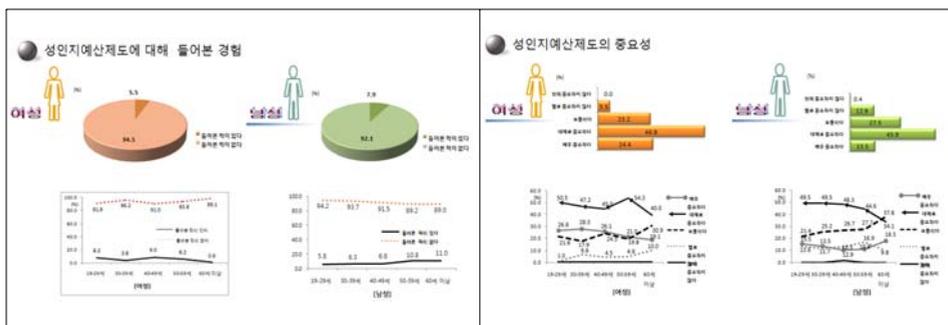
-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며, 또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성평등하게 국가의 재원을 배분(allocation)하는 행위이자 과정임

- 기획재정부(2009), 『2010년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 『국가재정법』 제26조,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3. 정책효과

- 국민들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들어본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6.7%만이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요성(정부가 예산을 양성평등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5.4%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국가의 성평등 순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7.7%가 걱정된다고 응답함.



- 국가재정에 있어 어느 분야에 성평등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질문에 남녀 모두 사회복지·보건과 일자리지원 분야라고 응답하였음. 아울러 이렇게 예산을 편성·집행하였을 때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 분야에 대해서 남성은 국방분야, 여성은 일자리지원분야로 응답한 비중이 높았음.
 -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2항과 기획재정부『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지침』개선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2012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지침』에는 일자리지원사업 및 사회복지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2013년에는 국방분야사업을 중심으로, 2014년에는 교육인적자원개발분야를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임.

-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 홍보 동영상(공개토론회: 국가재정과 성인지예산 참조, 2010.10.15. 주최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공무원들에게 자발적인 예산서 작성을 독려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아가야 할



YouTube 상에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현재와 미래” 탑재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 결산과),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과)
 ▶ 관계부처 :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34개 중앙행정기관

여성의 연금저축 가입 장려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제공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V)-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1, e-mail : youngkk@kwdimai

요 약

현행 노후를 위한 3층 보장에서 개인연금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여성의 가입률이 낮고 여성에게 돌아가는 소득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필요. 근로소득이 작고 노후기간은 상대적으로 긴 여성에게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연금저축 가입률 제고 및 저축액 증가.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에 한하여 납입금액 전액을 연간 300만원한도(퇴직연금 본인 부담금과 합하여)로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최근 개정안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공제 추진 중이나 이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 시행되었는지는 미지수)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가계는 약 30% 정도에 지나지 않음
- 특히, 여성의 경우 노후소득재원 마련을 위한 개인적인 저축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미비한 실정임

-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금저축(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세제적격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받은 남성은 1,050,006명인데 반하여 여성은 408,905명에 그쳤으며 소득공제 금액 또한 남성이 여성의 2.70배에 달함
-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은 남성과 비교할 때 평균 5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서 노후생활자금이 생애 총 기간 동안에 조달되지 못할 장수위험(longevity risk)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노후소득재원을 위한 개인적인 저축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

2. 정책의 추진방향

- 현행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의 퇴직연금 추가부담액과 합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로 100% 소득공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2010년 8월 24일 기준) 이러한 소득공제 금액을 연간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계획임
-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은 정액공제이므로 상대적으로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들에게 적은 혜택이 돌아가게 됨
 -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한 은퇴 저축 금액은 한계세율이 클수록 커지게 되어 동일한 세제혜택으로 인한 저축을 동일한 기간 동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은퇴 시에 세율이 15%인 경우는 세율이 6%인 경우보다 약 2.5배의 자금을 마련하게 되며 세율이 35%인 경우는 세율이 6%인 경우보다 약 5.8배의 자금을 마련하게 됨

- 여성근로자의 경우 남성근로자와 비교할 때 모든 직종에서 소득수준이 낮으며 특정 직종에서는 소득격차가 1.6배에 달함
 - 단순한 평균 통계치의 비교만을 살펴보더라도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집단에서 남성은 여성과 다른 한계세율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많다고 할 수 있음
- 여성의 노후는 남성의 노후보다 평균적으로 5년 이상 길기 때문에 동일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게 위해서는 노후 소득 필요액이 남성보다 크게 됨
- 동일한 규모의 은퇴자금을 연금화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긴 평균수명으로 인하여 동일한 은퇴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성의 80% 수준으로 생활해야 사망시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많은 은퇴자금을 축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소득공제 혜택은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는 유인으로 작용함.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여성의 자발적인 저축금액을 늘릴 뿐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한 저축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퇴소득 재원 마련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구체적으로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남성과 여성의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아래와 같음

이자율 가정	여성의 소득공제액	남성의 소득공제액
은퇴이전 4%, 은퇴이후 4%	485만원	400만원
은퇴이전 4%, 은퇴이후 3%	496만원	400만원
은퇴이전 6%, 은퇴이후 6%	473만원	400만원
은퇴이전 6%, 은퇴이후 5%	480만원	400만원

-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한 저축 증가분 예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금액만큼 저축액을 증가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첫째의 저축 증가액과 장기적으로 이러한 저축 증가액이 10년간 지속되는 경우의 자금 규모 예시. 본 예시는 기존소득공제 대상자(408,905명)가 추가로 저축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것이므로 추가 소득공제로 인하여 신규가입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임

다양한 이자율 가정에 따른 추가소득공제 (원)	첫해의 저축액 (백만원)	이자율 4%인 경우 10년간 누적 저축액 (백만원)	이자율 6%인 경우 10년간 누적 저축액 (백만원)
850,000	347,569	4,172,954	4,581,239
960,000	392,549	4,712,983	5,174,105
730,000	298,501	3,583,831	3,934,476
800,000	327,124	3,927,486	4,311,754

- 추가적인 소득공제액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 예시 (각 한계세율별로 가입자 전체가 균등하게 분포되었다고 가정한 경우 즉, 한계세율 6%가 1/4, 15%가 1/4, 24%가 1/4, 35%가 1/4이라는 가정)의 추정치

이자율 가정	추가 소득공제 금액 (원)	기존 소득공제 대상자(408,905명) 추가 가입으로 인한 첫째의 세수 감소액 추정 (백만원/년)	기존 공제대상자보다 신규가입이 5% 증가한 경우의 첫째의 세수 감소액 추정 (백만원/년)	기존 공제대상자보다 신규가입이 10% 증가한 경우의 첫째의 세수 감소액 추정 (백만원/년)
은퇴이전 4%, 은퇴이후 4%	85,0000	76,465	21,815	43,630
은퇴이전 4%, 은퇴이후 3%	96,0000	86,361	22,310	44,620
은퇴이전 6%, 은퇴이후 6%	73,0000	65,670	21,275	42,551
은퇴이전 6%, 은퇴이후 5%	80,0000	71,967	21,590	43,180

3. 정책효과

- 여성의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
- 기 가입 여성의 경우 추가적인 저축을 유발
- 개인연금 저축 가입률 제고 및 추가 저축액은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노후소득 재원 마련을 유도할 것임

-
-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 관계부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

원조효과성과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DAC 기본원칙과 실천과제

수행과제명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적 전략

과제책임자 : 이선주 연구위원

Tel : 02-3156-7166, e-mail : leesut@kwidimail.re.kr

요 약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OECD/DAC의 최근 논의와 전략을 살펴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을 모색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OECD/DAC은 2005년 파리선언을 채택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5대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파리선언의 5대 원칙과 결합하여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원조효과성과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DAC 기본원칙(Guiding principles for Aid Effectiveness,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이하 DAC 기본원칙)’을 발간하여 원조효과성 제고에서 젠더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러한 맥락에서 DAC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이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과제를 현재 실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표를 마련함.

-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정책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수원국의 주인의식: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 아젠다를 지원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북돋는 것으로, 수원국의 주인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① 수원국의 빈곤퇴치 전략을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북경행동강령과 연계하며, ② 수원국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며, ③ 수원국 여성의 요구를 국가의 중장기개발계획에 반영하고, ④ 수원국 여성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성별분리통계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일관된 조율: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젠더를 크로스 커팅 이슈로 다루는 한편, ① 국제적 합의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수립, ② 정책대화체계 구축, ③ 수원국 젠더 전문가의 의견 수렴, ④ 수원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 ⑤ 성 주류화 추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⑥ 공적개발원조의 전 과정에 걸친 양성평등관점의 통합이 필수적임.
- 조화로운 정책수립: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조하여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꾀하려면, ①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동으로 분야별 젠더분석, 성인지적 감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② 타 공여국의 젠더전문가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③ 관련이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및 타 공여국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④ 취약국가의 여성을 지원하는 국제협약과 결의안을 활용해야 함.

- 성과중심의 원조운영: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 성과중심의 평가 틀에 양성평등 관련 지표를 포함해야 하며, ② 성별분리통계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고, ③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행동강령(Action Plan)’이 마련되어야 하며, ④ 수원국 정부와 시민을 대상으로 개발원조에 관한 성인지적 교육이 요구됨.

- 상호책임성: 공여국은 수원국의 성별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매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①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② 공공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수원국의 책임성 강조, ③ 국회의원이 포함된 정책대화 활용, ④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한 실무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⑤ 양성평등정책마커 이용, ⑥ 동료검토의 시행, ⑦ 다자간 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함.

[원조효과성과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DAC 기본원칙과 실천과제 체크리스트]

구분	원조효과성과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DAC 기본원칙(2008)	실천과제	시행 여부
수원국의 주인의식	▪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에 기초한 수원국의 빈곤퇴치전략 지원	▪ 공적개발원조의 계획과 집행에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북경행동강령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원	
	▪ 시민사회와 협력 및 양성평등 지원 방안 모색	▪ 수원국 NGO 지원과 협력	
	▪ 빈곤퇴치전략과 중기개발계획에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수원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조	▪ MDGs와 빈곤퇴치전략의 연계 지원 ▪ 거버넌스 구축 지원	
	▪ 성별 자료 수집을 위한 국가 통계기관 지원	▪ 성별분리통계 작성 지원	
일관된 조율	▪ 국제적 합의와 협약 준수	▪ ODA 지원 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와의 일관성 유지	
	▪ 정책대화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 정책대화체계 구축	

구분	원조효과성과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DAC 기본원칙(2008)	실천과제	시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강화를 다루는지 모니터링 외부의 전문지식 활용 시, 수원국의 젠더 전문분야를 반영 지역적, 국제적 양성평등 합의 이행을 위한 국가 역량 및 지식 형성 재무부를 비롯한 부처들이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성과 관리 예산 시스템을 강화 시민사회가 예산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대화에 여성단체 참여 도모 한국의 개발관련 여성단체 지원 수원국의 젠더&개발 전문가 풀 구성 ODA 연구 확대 및 국내외 모범사례 발굴 관련 지식 및 정보를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공유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실시 국무총리실에 젠더 & 개발 정책담당관 신설 한국수출입은행과 KOICA에 젠더&개발 부서 설치 성인지예산이 적용 대상되는 과제 수 확대 일정 비율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설정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집행 여부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조화로운 정책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동으로 젠더 분석, 성인지적 감사, 성별영향 평가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동으로 성인지적 관점으로 빈곤 및 사회영향평가 타 공여국 젠더 전문가 의견 및 지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토록 하여 공여국간의 분업이 이루어지게 함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는 공동원조전략에서 탁월한 영향을 발휘 DAC 원칙을 기반으로 취약국가의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는 여성의 참여와 보호 방식에 대한 심사숙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상원조의 분야별 성 분석과 성별영향평가 실시 젠더 프로파일 생산 성인지적 CAS 수립 사회영향평가 실시 공여국 간의 정보공유 및 인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의제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1888호, 1889호 등을 CAS에 반영 	
성과 중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 지표를 포함하는 평가 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체계구축 질·양적 양성평등 지표 개발 	

구분	원조효과성과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DAC 기본원칙(2008)	실천과제	시행 여부
원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립 ▪ 성별분리통계 수집과 분석, 활용 및 보급 ▪ 모니터링 과정에서 분야별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분리통계 생산 ▪ 모니터링 시스템과정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실현 정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과 시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성인지적 개발 성과에 대한 요구를 증가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의 정부관계자 및 시민에게 개발원조에 대한 성인지 교육 및 연수 기회 제공 	
상호 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 정부가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기 위해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 ▪ 수원국 NGOs에 대한 공여국의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 여성단체 지원 확대 ▪ 수원국과의 정책대화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서비스 제공과 시민에 대한 책임성 증대를 위한 수원국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등과의 정책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불평등과 여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국회에서 알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지원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국회에서 알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 국회의원 활용 ▪ 수원국 정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의 정책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관련 실무자들이 성과 도출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제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증진 행동계획(Gender Equality Action Plan) 수립 ▪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한 실무자들에게 인센티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활동에 투자하는 ODA 비중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마커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여국의 원조 효과성 평가를 위한 DAC의 동료검토 과정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검토 실시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 기구와의 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 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원조의 일관성 유지 ▪ UNWOMEN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구분	원조효과성과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DAC 기본원칙(2008)	실천과제	시행 여부
		국제적 의제 개발 ▪ OECD/DAC 양성평등네트워크와의 공조체계 강화	

3. 정책효과

- ‘원조효과성과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DAC 기본원칙과 실천과제 체크리스트’를 통해 한국의 원조기관 및 관련 부처들이 파리선언의 원칙별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무엇을 실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실행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음.
- 그 결과 현재 도입되지 않았거나 시행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 원조기관 스스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조함.
- 궁극적으로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인권 외교를 통한 지구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주관부처 : 외교통상부(개발정책과), 여성가족부(국제협력담당관실)
 ▶ 관계부처 : 국무총리실(개발협력정책관실),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

전업주부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임의가입 기준완화 및 보험료 보조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1, e-mail : youngkk@kwidimail.re.kr

요 약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혹은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인 전업주부의 경우,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전업주부 임의가입자인 경우 가입소득월액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제안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노후 소득 재원의 3층보장체계에서 1층을 담당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보험이지만 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법적, 제도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서 발생하는 경우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제도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존재
- 국민연금의 가입을 성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20~60세 사이의 남성의 45.8%가 가입되어 있는 반면, 여성의 25.8%만이 가입되어 있어서 성별로 차이가 존재함.

- 특히,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무소득 배우자 (전업주부)는 2009년 4월 기준으로 4,864,576명 (우해봉 (2010) 참조로 계산)이며 무소득 배우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인 임의가입자 수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27,253명에 지나지 않아서 임의가입자가 모두 전업주부라고 가정하더라도 전업주부의 국민연금에 가입률은 최대 0.6%에 그침. 최근 내연금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임의가입자가 2010년 4월 현재 44,25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수치를 4,864,576명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입률은 0.9%에 그쳐서 채 1%도 되지 못함. 이는 전업주부의 경우 자신 명의의 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큰 집단임을 나타내는 통계치라고 할 수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업주부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노후소득 안정화를 꾀하기 위하여,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임의가입의 경우 가입자의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업주부 임의가입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제언함.
-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연금제도의 성격상 가입기간이 길어야 하며 수혜기간 또한 길어야 순연금 효과가 나타나고 연금의 중복 급여 발생시 조정이 생겨서 연금보험료를 내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손해라는 인식 때문임.

- 하지만, 평균적으로 연금가입으로 인한 혜택이 중복급여의 조정이 발생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손해 보다는 크며 그러한 혜택은 노후 소득안정화가 시급한 저소득층 일수록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장려할 필요성이 존재함.
- 우리나라 국민의 1인 1연금 캠페인에 맞추어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장려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입을 가능토록 함. 현재 임의 가입의 경우 기준연도의 지역가입자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상으로 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여 소득수준이 평균 이하인 가계의 전업주 부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하라도 자유롭게 국민연금을 가 입하도록 장려. 가계소득이 평균을 넘는 경우에는 최소 지역가입자 중위 수 평균소득월액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유지할 수 있음.
- 또한,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 조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이 790,000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 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79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액으로 35,55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 이러한 보험료보조는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 해 지원하며 예산의 부담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만 보조해 주는 방안 을 꾀할 수도 있음.
- 현재 전업주부의 최대 0.6%에서 0.9%만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임의가입 장려로 인하여 추가 가입하는 전업주부 가 전체 대상의 5% 대에만 (현재 가입자보다 12배 성장) 달한다고 하더 라도 이들의 임의가입으로 인한 노후소득 안정화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 라고 생각할 수 있음.

<예시>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소득대체율과 소득대체 증가율

가입기간	남편 급여수준	부인 가입수준	남편 소득대체율(%)	남편+ 부인 소득대체율 (%)	증가율
10년	50%	50%	0.19	0.32	68%
		100%		0.36	89%
		200%		0.45	137%
	100%	50%	0.13	0.20	54%
		100%		0.22	69%
		200%		0.26	100%
	200%	50%	0.11	0.15	36%
		100%		0.17	55%
		200%		0.20	82%
20년	50%	50%	0.34	0.58	71%
		100%		0.66	94%
		200%		0.81	138%
	100%	50%	0.23	0.36	57%
		100%		0.39	70%
		200%		0.47	104%
	200%	50%	0.20	0.28	40%
		100%		0.30	50%
		200%		0.35	75%

*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의 평균소득월액에 대한 연금 급여액의 비율로 계산하였음

□ 전업주부 임의가입자에 대한 국고보조에 따른 소요예산

- 전체 전업주부의 1%가 추가로 가입한다는 가정하에 이 중에서 기준 소득 월액 790,000원 이하로 가입하는 경우가 50%이며 (이중 1/3이 790,000원의 35%, 1/3이 790,000원의 50%, 나머지 1/3이 790,000원 수준으로 가입

한다고 가정) 790,000원 초과로 가입하는 경우가 50%인 경우의 첫 해 소요예산

가입소득월액	가입인원 (명)	국민연금보험 료 (원/월)	국고보조금액 (원/월)	국고보조 총액 (원/ 1년)
790,000원의 35%	8,075	24,885	12,443	1,205,707,505
790,000원의 50%	8,075	35,550	17,775	1,722,439,293
790,000원	8,172	71,100	35,550	3,486,383,147
790,000원 초과	24,323	71,100 초과	35,550	10,376,140,318
합계	48,646			16,790,670,262

- 전체 전업주부의 5%가 추가로 가입한다는 가정 하에 이 중에서 기준소득월액 790,000원 이하로 가입하는 경우가 50%이며 (이중 1/3이 790,000원의 35%, 1/3이 790,000원의 50%, 나머지 1/3이 790,000원 수준으로 가입한다고 가정) 790,000원 초과로 가입하는 경우가 50%인 경우의 첫 해 소요예산

가입소득월액	가입인원 (명)	국민연금보험 료 (원/월)	국고보조금액 (원/월)	국고보조 총액 (원/ 1년)
790,000원의 35%	40,376	24,885	12,443	6,028,537,525
790,000원의 50%	40,376	35,550	17,775	8,612,196,464
790,000원	40,862	71,100	35,550	17,431,915,734
790,000원 초과	121,614	71,100 초과	35,550	51,880,701,590
합계	243,229			83,953,351,312

3. 정책효과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 및 가계 소득의 안정화 : 전업주부의 가입율이 현재 0.6%에서 5%로 증가할 때, 첫째 국민연금 조성 기금은 약 1,700억 이상이 될 것이며, 남편만 가입한 경우와 비교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소 50% 이상 증가하는 가계가 240,000 가계에 이릅니다.

- 1인 1연금 시대를 앞당겨 공적연금제도 선진화를 꾀함.

-
-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 관계부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

정부가 남녀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나라살림을 운영할 때 경제적 효과 따져보면.....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추정: CVM을 이용한 실증분석
과제책임자 : 조선주 연구위원 Tel : 02-3156-7109, e-mail : sjcho@kwidimail.re.kr

요 약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국민편익에 대해 생활 속 정책이야기로 정부의 정책블로그 정책 공감(<http://blog.daum.net/hellopolicy>) 또는 『성인지예산서』작성 공무원 교육자료 및 안내자료 등에 예시로 삽입함으로써 국가재정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성인지예산에 관한 연구는 제도의 초기인 만큼 인프라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개념, 추진체계, 예·결산서 양식 및 지침 등에 관한 성장은 괄목 할 만하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한 경제학적 실증연구는 일관적으로 정리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임.
-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며, 그 제도의 시행이 안착됨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2005년 기획재정부의 『2006회계연도 예산안 작성지침』에 성인지예산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부터 볼 수 있음.
- 2007년, 2008년도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 연구 및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2008년 『2009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처음으로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음.
- 중앙관서의 경우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대상사업을 확대 적용해나가는 반면(기획재정부, 2009), 두 번의 예산서 작성제출과 관련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 성과를 요구받고 있음.
-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정부의 재정사업은 시장에서 거래되지는 않지만 국민들에게 유용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시장 재화나 서비스(non-market goods or services)임. 비시장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관찰하기 어려움. 이 경우, 지불의사를 측정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부분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음.

3. 정책효과

- 성인지예산이 지나치게 개념적인 타당성만을 갖는 것에 대해 논의한 것과 달리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도적 의의를 찾음.
-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고, 이러한 성과들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제

적 가치평가가 간접적이지만 가능해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재정사업을 실시할 때, 정책수요자인 국민들의 성별을 고려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생기는 경제적 가치를 가상시장가치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여 추정함.

- 추정결과 정부가 재정사업을 성평등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였을 때의 국민 1인당 연간 편익은 12,830원(여성 15,187원, 남성 23,626원)이었으며, 모집단을 20세 이상 성인인구로 가정할 경우, 연간 4천 6백 5십억 원이 됨. 즉, 정부가 재정사업을 성평등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였을 때의 국민이 느끼는 성평등 개선의 가치가 1가구당 연간 29,095원이 된다는 것임.
- 이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국민편익에 대해 생활 속 정책이야기로 정부의 정책블로그 정책공감(<http://blog.daum.net/hellopolicy>) 또는 『성인지예산서』작성 공무원 교육자료 및 안내자료 등에 예시로 삽입함으로써 국가재정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인식을 확산

우리가 늘 사용하는 화장실
남녀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적 효과 따져보니.....



지난 몇몇 교회에 잘 다녀오셨나요?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여성화장실 줄이 길에서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지금은 많이 달린 것지만 임미들이 어쩔 어찌 더리고 화장실에 갈 경우 이비들이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며 지루해하는 경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종종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요구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화장실의 변기 수를 여성화장실의 변기수를 남성화장실의 1.5배로 늘렸습니다. 또한 남성화장실에 기저귀대도 설치하였고, 이미 최근에서는 화장실에서 싸우는 경험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제도가 성인지예산제도인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시업을 성평등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였을 때의 성평등 개선의 경제적 가치기 1인당 연간 12,830원이라고 하네요.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51,320원이니 되요, 한 시업이 아니라 모든 시업에 이런 편성을 갖는다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기 창출되지 않을까요



한국의 성인지예산 제도화 : 현재와 미래



투명한 국기재정, 성평등적 편성
성인지예산제도, 국기재정 선진화와 믿겨드립니다.

[그림] 정책 블로그 및 안내서 예시(안)

-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 결산과),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과)
- ▶ 관계부처 :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34개 중앙행정기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성인지 분석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1 e-mail : youngkk@kwidimail.re.kr

요 약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예산 상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 예산 자체의 중성적 특성으로 인해 각 한부모가족의 차별적 상황과 그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므로 한부모가구의 성별, 연령, 학력,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지원을 제안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저소득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 주거지원,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707.5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2010년 예산은 661억으로 전년에 비해 약 14%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 사업은 수업료, 입학금,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과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빈곤여성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여성정책으로 다루어지지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성중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여성빈곤정책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

기되고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와 1달에 5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2008년 기준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절반가량이 혜택을 받았음. 하지만 고용안정을 통한 소득보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가족의 소득보장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교육비 지출에서도 입학금과 교육비 이외에 교재 및 교육지원비 지원을 도입하고, 1달에 5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현실화될 필요가 있음.
- 여건과 생애 주기에 따른(취업 준비, 육아 등) 여성한부모 소득보장을 위한 생계비 급여 신설
- 남성한부모 가주주를 위한 보육 지원 및 서비스 시스템 확장
- 주거, 의료 및 생활필수자원(전기, 가스, 수도 등) 지원 확대

□ 복지자금 대여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

- 복지자금대여는 2008년도 133세대를 대상으로 2,000백만원, 2009년도에는 200세대를 대상으로 3,000백만원, 2010년도에는 250세대를 대상으로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대상자는 전체 저소득한부모가족의 0.001%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소득보장책을 마련해 주지 못함. 소득보장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현 사업예산 비로는 매우 미비하므로,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창업초기부터 안정화시기까지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예산집행이 필요.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 실제적인 프로그램운영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 운영은 2009년에 시작되어 2010년 424백만원으로 예산이 상향조정됨. 그러나 거점기관 운영지원은 미혼모·부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현물지급이 적고 장기적으로 시행되는 생애주기적인 지속적 지원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머무르면서 위기를 피해가는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함. 또한 전반적으로 시설운영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어 실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 및 적극적인 방안의 도입이 모색되어야 함.

□ 취약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지원의 탄력적 적용

- 현재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및 심리상담, 지역자원연계 등 자립에 요구되는 서비스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예산 또한 프로그램 운영의 질이나 참가자의 수, 만족도를 반영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음.
- 여성한부모의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원에 관심과 욕구가 많으나 지원 경로를 찾지 못해 서비스에서 배제됨. 남성한부모는 전통적인 남성상의 영향과 사회적 위축감으로 정서적 지원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거나 무관심함. 이는 본인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성별·연령별로 다양한 심리·정서적 요구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홍보가 필요.

3. 정책효과

- 한부모가족에 대한 획일화된 기존의 정책 접근으로부터 벗어나 한부모가족 안에서의 다양성에 대응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

-
-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 관계부처 :
-

One Source for Four Groups 장애인 통계 생산 확대

수행과제명 : 여성장애인 지표 개발 연구

과제책임자 : 전기택 연구위원

Tel : 02-3156-7178, e-mail : junkt@kwidmail.re.kr

요 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여성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시행과 “이중차별”로 표현되는 여성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보여주는 장애인통계 생산을 위해 향후 장애인통계 정책 방향을 ‘하나의 조사에서 남녀장애인과 남녀 비장애인의 직접비교가 가능한 장애인통계’(One Source for Four Groups)로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UN의 『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반영한 것임.

그러나 여성장애인 정책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이중차별”로 표현되는 여성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가 부재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여성장애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지위와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여성장애인 통계 및 지표의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여성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여성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적절히 보여줄 수 있는 여성장애인 통계의 생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함.

첫째,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통계의 정책방향을 ‘하나의 조사에서 남녀장애인과 남녀비장애인의 직접비교가 가능한 장애인통계(One Source for Four Groups)’로 설정함. 현재의 장애인 통계는 남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생산되고 있어 남녀 장애인과 남녀 비장애인의 직접 비교가 어렵고, ‘이중차별’로 표현되는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향후 장애인통계는 하나의 조사에서 남녀 장애인과 남녀 비장애인을 직접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승인통계의 장애상태 작성을 의무화함. 이중차별, 다중차별로 표현되는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승인통계 작성시 성별, 장애상태의 동시 작성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사회분야 통계를 포함한 모든 국가승인통계 작성 항목에 성별과 장애상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승인통계 승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함.

셋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장애상태 문항 추가, 『사회조사』의 장애상태 문항 개선,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의 조사대상에 비장애인 추가 등을 통해 남녀 장애인과 남녀 비장애인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국가승인 통계 생산을 확대함.

넷째, 국가승인통계의 장애측정 도구를 표준화함. 모든 국가승인통계의 장애 측정 도구와 적용 방법을 표준화하여 동일한 장애 측정 도구를 사용한 다양한 분야의 통계조사를 통해 보다 다양한 남녀장애인과 남녀비장애인의 비교통계를 생산함.

3. 정책효과

남녀 장애인과 남녀 비장애인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장애인통계의 생산을 통해 기대되는 정책효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체계적 파악이 가능함. 남녀 장애인과 남녀 비장애인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장애인통계를 통해 여성장애인과 여성비장애인, 남성비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대적인 격차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둘째, 여성장애인 정책 추진 시 준거기준을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여성장애인 정책 수립 및 평가에서 여성장애인의 정책 수혜도와 지위 개선 목표를 남성장애인, 여성비장애인, 남성비장애인 등 3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정책의 정교화하에 기여함.

-
- ▶ 주관부처 : 통계청(통계정책과, 사회통계기획과, 고용통계과)
 - ▶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
-

여성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제고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강화

수행과제명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서비스 발전방안

과제책임자 : 민무숙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22, e-mail : msmim@kwidimail.re.kr

요 약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지원 서비스의 효율화와 관련 기관들의 상호 밀착적인 연계가 지역단위 수준에서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기초단위의 거버넌스가 구축, 지원될 필요가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여성들의 재취업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실제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는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역할과 개입이 매우 중요함.
- 현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면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책무가 부여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지원이 지역에서 보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부자원의 활용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재취업지원 업무를 경험이 낮은 기관들의 경우 기관 자체의 단독 역량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지자체의 지원과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
- 특히 여성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손쉽게 정보를 얻고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의 산업체 특성에 맞는 훈련을 통하여 지역의 관련 기관들을 연결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데에 지자체의 관여와 역량발휘가 매우 긴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지자체 여성정책과의 주도적 역할 강화: 여성인력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여성정책과는 지역전체의 일자리 센터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과나 일자리 지원과,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팀 등과의 업무 협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여성정책과내 여성인력계의 신설 필요: 현재 광역단위 수준의 조직 편제에 있어서 여성인력업무는 1인이 다른 여타의 업무와 함께 수행하는 정도여서 사실상 지역 전체의 여성일자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기획하거나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임. 향후 관련 사업과 재정의 확대가 전망되는바 각 지역의 여성정책과내에 여성인력계를 신설, 전담자를 전문직으로 둘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지역의 계획수립과 사업수행을 담당하도록 하여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킴.
- 기초단위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여성재취업지원서비스 경험이 낮은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능력은 기관 자체의 단독 역량으로는 해결하기 어

려우며, 지자체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현재 공식적으로 운영되어 가동될 수 있는 거버넌스는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이지만 이 또한 광역단위 수준에서 형성되는 체계로 포괄하는 지역 범위가 광범위하여 개별 기관들의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보다는 한 단계 지역밀착적인 기초자치 단체 수준의 거버넌스가 요구됨.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 근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기를 원하는 속성이 강하므로 광역수준보다는 기초지역 수준의 유관기관간의 연계체제를 마련, 지원하도록 함.

3. 정책효과

- 여성재취업 지원기관(새로일하기센터)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 지역의 여성인력 정책 활성화
- 여성들에게 보다 지역 밀착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및 정보 제공 가능

-
-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
 - ▶ 관계부처 : 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정책과)
-

경력단절 여성의 녹색관련 분야 파트너십 훈련 도입

수행과제명 :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 녹색성장과 여성인력양성방안

과제책임자 :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0, e-mail : kimth@kwcdimail.re.kr

요 약

녹색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력수요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외국의 성별 녹색일자리 취업현황과 전망 분석, 현행 녹색부문 여성인력양성 현황, 취업현황 및 전망, 그리고 녹색사업체의 여성인력활용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함. 이를 토대로 녹색부문 여성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녹색성장에 따라 지역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가 변화됨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훈련도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전문대졸 이하의 인력수요가 많은 분야인 폐기물 처리사업, 친환경 제조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산업, 수송부문 효율성 향상산업 등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예컨대, 각종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검사원 등에 경력단절여성을 취업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의 추진방향

지역 녹색관련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을 가진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녹색관련 직업교육기관과 함께 지역 녹색사용자단체의 파트너십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①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경력단절훈련사업의 30%까지 녹색관련 훈련 직종과 관련된 훈련과정을 선정한다. 훈련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신청요건에 지역의 훈련기관, 해당 분야 사업체 혹은 사용자단체의 파트너십 구축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녹색관련 훈련과정의 경우 현행 3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는 훈련기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한다(2010년 현재 전국 77개 새일센터가 직접 또는 전문훈련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훈련을 실시함).

② 고용노동부 여성가장실업자 교육훈련도 지역별로 녹색관련 훈련과정을 일정 비율 할당해서 선정한다. 또한 ③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분권형 고용·능력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여성 녹색고용 창출사업 우대한다.

3. 정책효과

녹색부문의 여성기업주 지원과 성장촉진, 일반 여성기업주의 녹색화 지원 및 녹색정책 및 동향 등의 정보 제공

-
-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 ▶ 관계부처 :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

경제의 녹색화에 따른 여성기업주 지원 방안

수행과제명 :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 녹색성장과 여성인력양성방안

과제책임자 :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0, e-mail : kimth@kwcdimail.re.kr

요 약

녹색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력수요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외국의 성별 녹색일자리 취업현황과 전망 분석, 현행 녹색부문 여성인력양성 현황, 취업현황 및 전망, 그리고 녹색사업체의 여성인력활용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함. 이를 토대로 녹색부문 여성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녹색산업의 등장과 같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해 여성기업들은 역량 및 인력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녹색산업과 관련하여 시급한 정부지원은 자금지원, 판로지원, 세제지원, 정보지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의 녹색화와 함께 녹색분야 여성기업 혹은 일반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지원이 필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서 기업의 여성CEO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녹색분야가 다양함에 따라 녹색포럼은 분야별 개최하고, 여성CEO에게 국내외 녹색성장정책, 녹색산업 동향 및 시장 환경에 대한 정보, 부문별로 녹색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
- ② 녹색 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위한 여성기업 컨소시엄을 지원
- ③ 녹색경제부문의 여성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한다(현재 중소기업청이 5개 업종 5,400개 여성기업을 2년마다 조사하고 있으나, 표본수가 적어서 녹색여성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와 같은 조사를 기초로 여성기업에 대한 현황과 특징, 애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여성기업 지원 및 육성 시책을 수립

3. 정책효과

녹색부문의 여성기업주 지원과 성장촉진, 일반 여성기업주의 녹색화 지원 및 녹색정책 및 동향 등의 정보 제공

-
- ▶ 주관부처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

녹색 비전통적 분야의 여성취업지원 법제 마련

수행과제명 :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 녹색성장과 여성인력양성방안

과제책임자 :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0, e-mail : kimth@kwidimail.re.kr

요 약

녹색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력수요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외국의 성별 녹색일자리 취업현황과 전망 분석, 현행 녹색부문 여성인력양성 현황, 취업현황 및 전망, 그리고 녹색사업체의 여성인력활용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함. 이를 토대로 녹색부문 여성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녹색직업의 상당수가 여성고용비율이 낮은 비전통적인 일자리임. 그 결과 녹색성장으로 인해서 녹색직업의 수요가 증가되어도, 여성고용의 양적,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색 비전통적인 분야에 여성 참여촉진을 위한 법제를 정비해야 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혹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부처가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유망 비전통적인 직종 선정, 해당 직종에 여성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비전통적 직종에 대한 정보, 직업훈련정보를 제공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여기서 비전통적 직업은, 미국의 WANTO법과 같이 여성이 해당 직종의 전체근로자의 25% 미만을 구성하는 직종으로 정의한다.
- ② ‘전통적 직종의 여성고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조사는 녹색성장이 비전통적인 직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녹색관련 산업 및 직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관련 정책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 혹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3. 정책효과

현행 및 향후 녹색성장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규모가 확대될 여성진출이 저조한 비전통적인 직업에 대한 여성취업확대

-
-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

녹색분야 여성과학기술인력 취업지원

수행과제명 :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 녹색성장과 여성인력양성방안

과제책임자 :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0, e-mail : kimth@kwcdimail.re.kr

요 약

녹색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력수요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외국의 성별 녹색일자리 취업현황과 전망 분석, 현행 녹색부문 여성인력양성 현황, 취업현황 및 전망, 그리고 녹색사업체의 여성인력활용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함. 이를 토대로 녹색부문 여성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상당수의 연구기관 및 사업체에서 녹색기술관련 석·박사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을 녹색분야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들의 연구역량과 함께 취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연구개발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역량 및 취업능력 강화로 취업과 승진을 촉진시키기 위해 ‘WIST Academy 신기술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SC양성교육, LM양성교육, 특허전문인력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 ① 향후 녹색성장과 함께 ‘녹색분야 신기술 훈련과정’을 추가적으로 신설,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녹색분야 신기술 훈련과정’의 신청대상 여성과학기술인은 녹색분야 전공자 혹은 취업자이고, 지원신청서와 교육내용을 평가하여 교육비의 80%를 지원한다.
- ② 또한 녹색분야 국내외 학회 및 연수 지원을 통해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과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3. 정책효과

녹색분야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촉진과 함께 녹색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강화

-
-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

박사과정 여학생의 커리어개발 지원

수행과제명 : 여성 박사인력의 교육-고용 불일치 실태와 과제

과제책임자 : 신선미 연구위원

Tel : 02-3156-7125, e-mail : seonshon@kwidimail.re.kr

요 약

박사과정 여자 대학원생을 위한 커리어개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을 확보함. 동시에 여자 대학원생들이 커리어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정책 홍보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정책목적 : 여성 박사의 교육-고용 불일치 완화 및 고급 여성인력의 활용도 제고
- 필요성 : 교육-고용 불일치 일자리를 경험한 여성 박사의 65.0%는 대학이 박사과정 졸업자의 취업준비를 지원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들 중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17.8%에 불과함. 또한 뚜렷한 직업적 목적 없이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재학 중에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여성 박사들이 상당수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박사과정 여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중에 진로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
- 취업준비 지원은 단과대학이나 학과 수준보다 전체 대학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함.
- 여성가족부는 4년제 대학 여대생의 커리어개발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정책대상을 석·박사과정 학생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의 확보, 석·박사과정 여학생을 위한 신규사업 홍보 등이 요구됨.

3. 정책효과

- 여성 박사인력의 교육-고용 불일치 문제 완화
- 고학력 여성인력정책의 정책대상을 대졸 여성에서 대학원 졸 여성까지 확대함(투자비용이 큰 여성 박사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함)

-
-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여성인력정책과)
 - ▶ 관계부처 : 교육과학기술부(대학원지원과)
-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 일자리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수행과제명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IV :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과제책임자 : 오은진 연구위원

Tel : 02-3156-7126, e-mail : eunjin5@kwidimail.re.kr

요약

본 과제는 사회서비스의 부문에서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을 매개하는 고용서비스 인프라의 역할 및 기능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일자리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장·단기적으로 제시하였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공급체계의 균형적 만남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개선에 대한 논의와 이를 통한 고용활성화 지원체계의 개선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해 고용 시장의 수요확대 및 공급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 1) 자생적 시장 형성을 위해 서비스 이용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인 Fee slide scale system의 도입 2)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내역에 대한 소득공제(Tax Return)혜택 부여
- 이용자 선택권 확보를 위한 제공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 : 3) 제공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시스템 개발 4)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과의 건강한 경쟁시스템 도입 5) 사회서비스 돌봄 자격 인증 및 자격관리체계 수립
- 고용연계의 부재 문제 : 6) 생활밀착형 정보 네트워크 구축 7) 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대형브랜드화로 시장경쟁력 확충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보상체계의 다양화 : 8) 서비스 품질에 대한 표준화와 서비스 이용자 만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 9)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업무수행을 경력화
- 아이돌보미 사업의 변화와 전달체계 개선 10) ‘다’형의 영업 증가에 따른 기관의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11)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집중되는 전달체계를 다른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으로 확대
- 11개 단기정책 이 외에 장기적으로 1) “사회서비스 이용 상품권” 발생을 통한 서비스 유통 구조 변화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인증제 도입 3) 전문자격과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보수교육 체계화 4)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계좌제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방안 5) 포

털사이트 개념의 사회서비스 종합 정보망 구축 6) 아이돌보미를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

3. 정책효과

- 제시된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서비스 부문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고용 시장의 수요확대 및 공급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임.

-
-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정책과)
 -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한 정책분석 심포지움 개최

수행과제명 : 2010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심층분석보고서

과제책임자 : 이택면 연구위원

Tel : 02-3156-7167, e-mail : onbike@kwidimail.re.kr

요 약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정책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특정 정책분석 주제를 발굴, 각계 전문가 위촉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정책분석 수행케 하고 결과를 정책분석 심포지움 형태로 발표.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여성정책의 수립과 평가 및 개편은 엄밀한 계량적 분석에 입각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 관계부처의 정책당국에서 정책 혹은 사업을 기획, 평가, 수립, 개편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계량 데이터를 요청하면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요청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피드백 창구가 필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여성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모든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필요한 정책분석 테마나 계량분석 테마를 수집하고,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한 분야를 선정한 다음,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해당 분야의 정책분석이나 계량분석을 수행케 하고 그 결과를 정책분석 심포지움 형태로 부처와 공유

3. 정책효과

-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의 정책 활용도 제고
- 관계 부처에 대한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 홍보
- 여성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정책 및 사업 결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 강화

-
-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여성경활률 장기 추세 예측 및 중장기 여성경활률 목표치 설정

수행과제명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 이택면 연구위원

Tel : 02-3156-7167, e-mail : onbike@kwidmail.re.kr

요 약

지난 40여년간의 여성경활률 장기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의 여성경활률 변화 패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5년이 지나도 여성경활률은 50%대에 완전히 진입할 수 없다는 예측이 도출된 바, 향후 특단의 여성경활률 제고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여성경활률 제고를 위한 정책발굴에 앞서 선결요건은 여성경활률의 장기추세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그에 입각한 추세 예측과 중장기 목표 경활률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지난 40여년간의 분기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시계열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의 장기적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5년이 지나도 여성경활률은 여전히 48.8%~50.6%사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 바, 여성경활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여성경활률 제고를 위한 정책도구의 수립과 평가 및 개편은 엄밀한 계량적 분석에 입각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 따라서 여성경활률 장기 시계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그에 입각한 추세 예측, 그리고 정책도구의 도입으로 인한 추세의 변화 예측 및 중장기 여성경활률 목표치의 설정이 필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여성경활률의 장기 추세에 대한 예측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변수의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주기적으로 실행하여, 여성인력정책의 장기적 추진 기초를 이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재정립함.

3. 정책효과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패턴과 변화 방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계량 자료 확보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정책 및 사업 결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 강화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대상 전국 종단면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수행과제명 : 2010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심층분석보고서

과제책임자 : 이택면 연구위원

Tel : 02-3156-7167, e-mail : onbike@kwidimail.re.kr

요 약

여성의 일과 가족생활 전반에 관한 주기적 종단면 조사의 법제화: 법적 근거의 미비로 예산확보나 패널 유지율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여성발전기본법 혹은 여타 관련 법에 여성의 일과 가족생활 전반에 관한 패널조사 실시를 명문화.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전국적 종단면 조사의 필요성 및 시행 방법 등에 관한 명시가 없는 관계로, 예산의 지속적 확보나 패널 참여율 유지에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안정적 예산 확보와 높은 패널 참여율 유지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종단면 조사의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에 여성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규모의 여성 대상 중단면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시.

3. 정책효과

여성의 일과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중단면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패널 참여율의 제고. 정책수립 및 평가에 있어 계량적 분석에 입각한 객관성과 엄밀성 증대.

-
-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의식 및 유권자 권리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수행과제명 : 2010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 김원홍 연구위원

Tel : 02-3156-7101, e-mail : kwh56@kwidimail.re.kr

요 약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충분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정치부문에 여성의 대표성이 증가되어야 함. 이를 위해 여성정치인 뿐만 아니라 여성유권자의 정치세력화 확대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향상을 위한 연구나 자료가 부족함. 이에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여성정치세력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및 축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각 정당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충분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정치부문에 여성의 대표성이 증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여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여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지지 역시 커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정치인 뿐만 아니라 여성유권자의 정치세력화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향상을 위한 연구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주요 투표 행위자로서의 여성유권자가 선호할 공약이나 정책 마련 등에 있어서 세세하고

전문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여성정치세력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및 축적을 위해, 각종 공직선거시 성별통계분리 산출 의무화 및 남녀 유권자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 조사연구 예산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여성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입장에서는 물론이지만 크게 보아 생활정치실현 및 사회정의구현에 여성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주체는 크게 두 영역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이다.

2. 정책의 추진방향

□ 주체 1 : 정부

▶ 각종 공직선거시 남녀유권자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 조사연구 지원

-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행태 및 정치의식 조사연구는 예산이 많이 들어 그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부 학자나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연구하여 왔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 이러한 조사연구의 부재는 여성유권자들의 투표행태의 문제점과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치의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 따라서 앞으로의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 및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여성유권자 표의 조직화를 위한 전략 연구, 기존 정치 풍토에 여성정치문화의 영향력 발휘를 위한 방안, 여성에 관련된 입법을 담당하게 되는 의원들의 여성의식 조사, 여성진출을 성공으로 이끄는 선거제도 관련법제 연구, 경선제와 여성후보 확대방안 등의 연구 지원.

- 연구의 지속적인 연계성과 비교분석을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성별 통계 분리 산출 의무화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선거결과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성별 통계는 간헐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앞으로 각종 공직선거에서 남녀간 성차 및 성별 분류를 통한 여성정책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선거결과에 있어 성별분리 통계의 산출 의무화가 요구된다.

- 투표율, 직업 분류 등에 성별 분리 통계 산출이 요구된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성인지 능력 향상교육 강화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일반인 대상 혹은 정당관계자 대상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에 성인지 능력 향상교육을 일정과목 편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 여성가족부의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의식 및 유권자 권리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의식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성숙한 선거문화 조성(유권자의 권리, 후보자 선택, 입후보자의 소양 교육 등) 사업 추진시 여성가족부는 공동협력사업 형식 등을 통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단,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

□ 주제 2 : 정당

▶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의무제화

- 국회 및 지방선거의 지역구 30% 의무공천제로 바꾸어 여성공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정의실현 및 생활정치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
 - 금번 조사결과, 유권자들은 여성당선자의 증가가 ‘사회 각 분야 여성참여 증대(32.9%)’, ‘생활정치 활성화(23.8%)’, ‘부정부패 축소(22.4%)’ 등의 사회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 여성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지역별 공천 의무제화

- 유권자 의식 조사결과는 여성 후보 지지에 성별 요인보다 정당 효과가 크다는 점을 드러낸다.
 - 2006년 지방선거 직후 한국여성개발원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 여성이 출마한 기초의회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결과,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했다(20.1%) < ‘소속 정당을 지지해서’(31.0%)
 - 금번 과제에서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남녀 유권자의 여성구청장 후보 선택요인 조사 분석 결과, 여성구청장 당선지역의 경우 ‘여성 후보(인물)이기 때문에’ 지지했다(25.7%) < ‘소속 정당을 지지해서’(44.7%)
-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무엇보다 정당의 지지도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후보의 전략공천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여성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지역별 공천 의무화를 제도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 여성참여 의무제화

-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 비율 여성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공천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천 과정에서 여성의 이익이 배제되지 않으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 주요 당직에 여성할당제 도입

- 주요 정당에서의 여성들의 활동은 곧 여성정치참여 확대로 이어진다. 주요 당직에의 참여는 여성들의 주요 당무나 국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키우며, 이는 공직선거시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게끔 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 따라서 정당들은 특히 중앙당 주요 당직자에 일정비율 여성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의무화시켜야 한다.

▶ 여성정치인의 지속적인 육성 및 발굴 시스템 구축

-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정당의 역할로 “여성정치인 육성”과 “여성정치인 발굴”을 들고 있다. 따라서 정당들은 당차원에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정치학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인적 풀을 확장해야 한다.

▶ 우수 평가 지방의회 여성의원 및 자치단체장 재공천 보장

- 지방화시대를 맞아 생활정치를 기하기 위하여 여성의원 경력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향후 여성정치인의 경력지속 및 확충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여성의원에 대하여 재공천을 담보해주고, 당 우세지역에 일정 비율을 전략 공천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여성의원 경력지속 및 향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정책효과

- 여성의 정치력 향상과 지위 확보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 생산
 - 정부의 각종 공직선거시 남녀 유권자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 조사연구 지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공직선거 통계 산출시 성별통계 분리 산출은 정부, 정당, 여성단체가 여성의 정치력 향상과 지위확보에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연구결과와 기초자료의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 및 사회정의 구현
 - 여성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당의 모든 노력들은 여성 정치인뿐만 아니라 여성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 및 세력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좀 더 생활정치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를 대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국회, 정당 등
▶ 관계부처 : 선거관리위원회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에의 여성 참여확대 방안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예산의 젠더 분석
과제책임자 : 정해숙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21, e-mail : hschung@kwidimail.re.kr

요 약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에 여성을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여성 연수생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여성 연수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사업은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전문대, 대학원 포함)에게 전문기술연수에 소요되는 교육운영관련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1,044.5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2010년에도 80억원의 예산으로 2,000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일자리사업 확대 정책으로 154억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음.
- 만 32세 이하의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2년 이상 장기실업자와 함께 여성을 취업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여성에게 1~3점의 가산점을 주는 우

대조치를 취하고 있음. 비록 이 사업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여성인력에 대한 우대조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공계 여성인력 활용정책으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여학생의 진로를 이공계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그럼에도 이공계열에의 여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이공계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추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볼 때 이 사업에서 이공계 여성인력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 의미가 적지 않음.
- 그러나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여성 연수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미취업 이공계 여성 졸업자들에게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이 사업의 대상자라 할 수 있는 이공계 대학 미취업 졸업생 중 여성비율은 2007년 이후 별다른 변동 없이 31%~33%에 달하지만, 실제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은 사람 중 여성비율은 '07년 26.0%, '08년 23.2%, '09년 18.9%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임.
- 이에 가산점 제도의 실효성을 진단하는 등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지원 사업에 이공계 여성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첫째, 단기적으로는 여성 연수지원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운영방식을 개

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을 비롯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제도 도입 : 미취업 이공계 졸업 여성이 연수생 선발 시 가산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에 걸쳐 여성 연수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대부분의 연수기관에서 연수생 모집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이 가산점으로서 기능할 여지가 없기 때문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연수지원자 중 여성비율이 20% 이하인 기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 지원자 전원을 우선하는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연수지원자 중 여성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기관에서는 현행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병행함.
- 여성 연수생 지원을 평가지표 개선 :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평가지표가 2008년 사업평가 시 총 5점 만점에서 2009년 사업실적 평가에서는 총 10점 만점으로 배점이 높아지고 여성에 대한 배점도 1점에서 4점으로 높아짐. 이처럼 여성 지원율에 대한 배점이 강화된 것은 여성 연수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주관기관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이와 더불어 여성 지원율에 따른 세부 배점을 미취업 이공계 졸업자중 여성비율을 고려하여 34% 이상일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공계 졸업 여성 교육 및 취업 지원 기관간의 교류 확대 : 전국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WIST)와 4개 지역센터와 이공계 전문연수 주관기관들이 협력관계를 맺어 이공계 여성 연수생 모집과 취업에 도움을 받도록 함.

□ 둘째, 여성 연수생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도입함.

- 주관기관 선정 평가지표에 여성 연수생 모집관련 지표 삽입 : 현재 주관기관 선정 평가지표에 ‘연수생 모집선발 및 연수, 취업기업 확보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연수생 일반을 대상으로 한 모집에 관한 것임. 따라서 주관기관에서 여성 연수생 모집을 위한 별도의 차별화된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여성 연수생 모집을 위한

계획'을 별도의 평가지표로 설정하여, 각 주관기관이 여성 연수생 모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여성연수생 모집 시 이공계관련 학과의 탄력적 적용 : 연수생 모집계획 제출 시 여성 연수생 모집을 위한 홍보 방법과 함께 각 주관기관에서 개설하는 연수분야와 관련된 전공학과의 범위를 연수 주관기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하며, 이를 연수 주관기관 선정 시 심사함. 이 때, 이공계 졸업 여성 모집을 위한 기관의 노력 정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이 미취업 이공계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비이공계 졸업 여성이 일정 비율(20%) 이상을 상회하지 못하는 제한 조항 마련함.
- 여성 연수생 일정 비율 할당제 도입 : '여성과학기술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1조(적극적 조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법에 근거하여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에 '여성 연수생 일정 비율 할당제'의 도입을 추진함. 이공계학과에 따라 여성비율의 편차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연수분야별로 관련 전공학과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별로 모집단의 여성비율을 고려하여 여성 연수생 비율을 설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여성 연수생을 모집하도록 함.
- 여성전담 연수 주관기관 선정 : 이공계를 졸업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공계열 여자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동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여성 연수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함.
- 여성 연수생비율 증가 주관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여자대학이나 여성이 많은 학과를 방문하고, 여성 인력 수요가 있는 업체체를 발굴하는 등의 여성 연수생 지원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수반됨. 여성 연수생비율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이상 증가한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때 사업비에 여성 연수생 모집 및 취업지원 비용을 추가로 인센티브로 제공함.

- 셋째, 잔여 예산을 활용한 여성고용지원장려금을 조성 및 운영함. 전년도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잔여 예산을 여성고용지원장려금으로 조성하여, 이공계전문기술연수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여성 연수생을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이공계전문기술연수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연수생의 취업률과 이공계 여성 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음.

3. 정책효과

- 동 사업내 여성 참여 확대는 이공계 졸업 여성의 취업률을 높임으로써, 이공계 분야로의 여성인력 진출 촉진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임.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 방안

수행과제명 :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 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김원홍 연구위원

Tel : 02-3156-7101, e-mail : kwh56@kwdimail.re.kr

요 약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력이 지속되거나 확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상 개선방안, 둘째, 여성정치인 경력단절의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각 정당의 공천시스템상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경력직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방안이다.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력이 지속되거나 확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 중 10명 중 8명이 초선의원이었다. 이와 같은 초선과 재선 이상의원간 불균형적 분포는 대부분 선거제도나 정당의 공천시스템 상의 불합리성, 여성정치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에 따른 구조적인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개선방안을 고찰할 수 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상 개선방안, 둘째, 여성정치인 경력단절의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각 정당의 공천시스템상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경력직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방안이다.

2. 정책의 추진방향

□ 정치관계법상 개선방안

- ▶ 각급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할당제 30% 의무할당 법제화
- 연구결과 비례의원보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통한 주민 인지도 등에 기반하여 경력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행 여성할당의무제를 지역구 30% 여성할당의무제로 전환시켜, 여성 정치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또한 지역구 30% 여성할당의무제를 지킨 정당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이는 정당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할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각종 공직선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정수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비례대표제 정수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확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간 많은 정치학자들이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 정수 역시 인구대비, 공무원 수 대비, 경제발전속도 대비 OECD국가들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여 왔다.
-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재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 2,888석 중 375석으로 14.9%를 차지하고, 광역의회의 경우 전체 733석 중 78석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율로는 직능대표성 및 전문성 확보

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에는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이 많다.

-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하면서 현행대로 50% 여성할당제를 유지함으로써, 비례대표 여성의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2:1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여성공천비율을 70%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 이는 우선적으로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출 것이며, 이 역시 경력지속의 가능성 확대를 위한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 정당의 공천시스템 개선방안

▶ 공천심사위원회에 50%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

- 공천심사위원회에 50% 이상 여성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공천과정에서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및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 그 동안 우리나라 정당에서 구성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남성 주요 당직자로 구성되어 왔다.
 - 제16대 총선 이후 여성이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0% 안팎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번선거의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만 본다면 한나라당이 28.6%, 민주당이 33.3%이다.

▶ 여성친화적 공천심사기준 표준안 마련 및 가산점 확대

-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인 여성의원에게 금번 선거 공천에서 소속정당의 지도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는데, 중앙당 대표(9.8%)보다 지역위원회 (또는 당협위원회) 위원장(69.1%)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 이를 위하여 공천심사기준이나 절차 표준안을 만들어, 공천과정 참가자 누구나 그 결과에 수궁할 수 있도록 공천심사과정을 투명화하고 합리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더 나아가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후보에게 가산점 부여를 확대하는 등 공천심사기준이나 절차 표준안을 만들 때, 여성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 예를 들어 경선시 대의원 경선이나 상무경선 등 조직과 돈이 필요한 작업보다는 지역 여론조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조직과 돈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여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한다.
- ▶ 의정활동 우수의원 재공천: 공천심사기준에 의정활동실적 반영
-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여성의원에 대하여 공천심사기준에 의정활동실적을 반영하는 등 재공천을 담보해 주고, 당 우세지역에 일정 비율을 전략 공천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원의 경험과 노하우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부각되고 있는 생활정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경력직 여성정치인 육성방안

- ▶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성할당제 도입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배정은 대체로 전문성, 지역, 경륜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되나 현재 여성의원 수가 소수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남성의원에 비해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로 선출되는 경우가 적다.
- 여성의 상임위 배정이나 간부로의 선출은 본질적으로 여성의원 수가 증가하면 해결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여성의원들의 경력을 개발하고

리더십을 확보하여 더 많은 후진 여성 후보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여성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

▶ 주요 당직 여성할당제 도입

- 정당활동에서 주요당직을 역임한다는 것은 여성의원의 정치리더십 향상과 경력개발에 도움이 된다.
 - 당직역임이 소속정당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등 공천시 영향을 미쳐 의회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정당은 주요 당직자에 일정비율 여성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정당별 여성정치인 육성 및 발굴 시스템 구축

-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정당은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인재육성 및 발굴시스템을 갖추어, 연속적인 기조로 인재를 관리해야 한다. 현행 시스템 상에서는 대표, 주요 지도부의 교체에 따라 인재 발굴 및 육성에 연속성이 없다.
- 특히 정당의 기능 중 하나가 정치엘리트 육성이므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우수하게 수료한 여성당직자에 대하여 중앙당의 임원이나 각급 선거의 후보로 추천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여성후보군을 확대시키기 위해 중앙당뿐만 아니라 시도당에 여성을 위한 교육팀을 조직하는 것도 필요하다.

▶ 여성후보 지역구 개척·안착 지원 프로그램

- 여성의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지역구 관리이다. 그런데 조사결과 지역구 의원이 비례의원보다 경력지속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그 경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이 여성의 지역구 도전 및 안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정책효과

- 여성 정치 리더십 강화를 통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 위 개선 방안이 실시되면 현재의 여성들이 행사하고 있는 정치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고, 확대된 역량은 여성정치인을 육성하고 인재풀을 확장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고 실제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된다면, 134개국 중 115위인 한국의 양성평등지수(2009, WEF 발표)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할 것이다.
- 여성 지방의원의 경력 지속 및 확충의 기반 마련
 - 위 개선 방안이 실시되면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의 경력 지속 및 확충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더욱 효율적이며 전문적으로 의정에 반영될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의 안정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 주관부처 : 국회, 정당,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 : 선거관리위원회

지역인재육성사업 여성 수료자 취업효과 증진 방안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과제책임자 : 신선미 연구위원

Tel : 02-3156-7125, e-mail : seonshin@kwidimail.re.kr

요 약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취업효과 증진을 위해, 취업의지가 강한 수강생을 선발하도록 수강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종료 후 지역 여성 HRD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취업연계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취업자들에게 직무능력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업자들 역시 절반 이상이 관련분야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관련 효과가 높은 편이다. 특히 미취업자 중에서 사업 종료 후 취업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었다.

-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 관련 효과가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낮다. 취업자의 경우 직무능력향상이나 업무 개발, 승진, 이직 등 모든 항

목에 있어서 남성이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얻었고, 미취업자가 관련 분야로 취업했을 경우에도 여성의 고용지속성이나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원인으로 미취업자 여성 중 “교육받은 분야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다수 있었고, 사업 종료 후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의 88.2%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프로그램 등록 당시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등록한다거나, 프로그램 종료 직전이나 직후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취업연계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 정책의 추진방향

- 미취업자 대상 프로그램의 수강생 선발기준
 - 미취업자 대상의 프로그램 혹은 미취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강생 선발 기준에 지원자의 취업의지와 수료 후 구직활동 계획 여부를 포함시킨다. 취업의지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 평가하고, 수료 후 구직활동 계획은 1페이지 정도의 계획서로 제출하도록 한다. 자기소개서나 구직활동 계획서를 수립하기 어려워하는 여성의 경우, 지역 내 여성 HRD 기관(예, 새로일하기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한다. 시·도의 지역인재육성사업단은 여성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 내 여성 HRD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는 거의 없다고 본다. 다만, 지역 내 여성 HRD 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위해 회의비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 사업 종료 후 미취업 여성을 위한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 등록 당시 미취업자였던 여성들 중에는 구직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사업 종료 후 취업연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에 77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센터들은 센터가 설치된 기관(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의 지역인재육성사업단이 이들 센터에 지역인재육성사업 종료 후 취업연계 서비스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종료 시점에서 취업연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수요생을 선별하고, 각 수요생들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연계 서비스를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참여한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 사업단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관들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간의 업무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사업 종료 후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1인당 사업비를 1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도 사업에 참여한 여성 참여자(3,804명) 중 등록 당시 미취업자로 사업 종료 후에 취업 경험이 없는 여성의 수는 대략 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모두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약 1,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3. 정책효과

- 사업 종료 후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킴으로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취업효과 제고.
- 사후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의 품질을 제고.

-
-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여성인력정책과)
-

지역인재육성사업 여성참여율 50% 목표 설정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과제책임자 : 신선미 연구위원

Tel : 02-3156-7125, e-mail : seonshin@kwidimail.re.kr

요 약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주요 정책대상인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여성비율이 51.3%이며, 남성은 취업자가 더 많고 여성은 미취업자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여성 참여 목표비율을 50%로 제안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여성 참여율은 2009년 현재 38.1%이나, 정책대상인 경제활동인구의 여성 비율은 51.3%이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미취업 상태의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 참여율 목표는 50%보다 높게 설정해야 할 것이나 우선 50%라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 목표비율을 재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여성 참여율 목표비율을 50%로 설정하는 것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사업 성과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즉, 여성 참여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미취업자들이 사업 종료 후

에 취업에 성공하면 일자리 기회 확대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남성 참여율이 현재와 같이 60%를 초과하면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 대상의 사업이 주를 이루게 되고, 취업자의 일자리 질이나 직업역량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일자리 기회 확대라는 최우선적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다소 거리가 있다.

□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등록 시점과 프로그램 종료 후 최소 7개월이 지난 시점을 비교할 때, 취업자가 45.6%에서 70.6%로 증가하였고, 미취업자는 44.4%에서 30.3%로 감소하였는데, 여성은 취업자 비율이 34.9%에서 63.9%로 29.0% 포인트 증가하였고, 남성은 55.9%에서 77.4%로 21.5% 포인트 증가하였다. 미취업자가 사업 종료 후에 취업한 경험은 남성(65.2%)이 여성(53.7%)보다 많았으나, 남성 참여자의 대부분이 취업자였고 여성 참여자의 대부분은 미취업자였기 때문에, 결국 취업자 비율의 증가는 여성 쪽에서 더 높았던 것이다.

□ 지역인재육성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정책취지에 역행한다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들은 우선적인 정책대상 집단으로 성인 미취업자와 경력단절자를 들었으며 다음으로 청년층 미취업자를 들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여성 참여자의 취업이나 창업 기회가 남성보다 많거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많고, 직업능력 제고 효과도 남성보다 높거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2. 정책의 추진방향

□ 취업자 대상 프로그램의 비중 축소

-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정책대상으로 취업자와 미취업자(실업자 포함) 중에서 어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취업

자가 45.6%를 차지하는데, 취업자 대상의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사업과도 중복될 우려도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같이 다른 정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업자 대상 사업도 있고, 취업자와 미취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도 있으므로, 취업자를 전적으로 제외시키기 보다 그 비중을 30% 이하 정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취업자 대상의 사업은 취업자 대상 사업에 비해 취업의지가 있는 수강생 선발과 홍보를 위한 예산과, 사업 종료 후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2009년에 인재양성 프로그램 수가 120 가지였으므로, 프로그램 당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할 경우에도 6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향후 프로그램 수 증감에 따라 필요한 예산규모가 다를 것이다. 물론 현재 지원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사업비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공모사업분야별로 차등적인 여성 참여율 가이드 제공

- 여성 참여율 50%를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현재 여성 참여율은 프로그램에 따라 0%에서 100%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사업 유형별로 차등적인 여성 참여율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13개 시·도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계획서는 여성 참여율 가이드 준수 예정 여부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계획을 의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선정평가의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여성 참여율 가이드를 예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표> 공모사업(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율 가이드(안)

공모분야	사업특징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여성 참여율 가이드
기초자치단체사업	현장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40%	최저 50%
광역자치단체사업	지역의 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	40%	최저 20%
계속사업	전년도 우수사업	20%	최저 40%

- 남성 지배적인 직업분야의 프로그램은 여성 참여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취업의지가 있고 프로그램 이수에 적합한 여성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여성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업단은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예산이 없어도 여성 참여 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선정기준 수정

- 지역사회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밀착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지역의 전략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비해 여성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지역의 전략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사업은, 타 부처의 사업으로부터 막대한 국고를 지원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지역인재육성사업에서 소규모의 지원을 추가로 할 필요성이 낮다. 향후에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선정기준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정도보다 현장의 인력수요에 밀착된 맞춤형 여부를 더 중요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략산업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선정된 경우에도 사업홍보와 수강생 선발과정 운영에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사업단 컨소시엄에 여성 HRD 관련기관 참여
 - 여성 참여율이 높으면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단 컨소시엄에 지역의 여성 HRD 관련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 HRD 관련기관의 역할은 시·도사업계획 수립 자문활동, 신규 프로그램 제안, 프로그램 선정 및 평가위원회 참여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기존의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정책효과

- 미취업 지역주민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고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함.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사업추진 역량을 핵심 정책대상에 집중함.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인재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고용가능인구를 확대함.

-
-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여성인력정책과)
-

일.가족양립



가족친화기업 인증심사시 직장보육시설 가점부여

수행과제명 :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과제책임자 : 홍승아 연구위원

Tel : 02-3156-7149, e-mail : hongsa@kwidimail.re.kr

요 약

일과 가정의 양립요구와 필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직장보육시설은 취업부모의 자녀양육 지원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차원에서는 우수인력 확보와 인력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경영목표가 됨. 특히 직장보육시설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이어서 시설설치를 보다 활성화하여야 함. 이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심사에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기업의 설치유도와 동시에 가족친화기업의 확대를 꾀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특히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가 필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법인세 등 세제지원)

- 직장보육시설 관심유도와 인식전환을 위해 CEO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설명회 개최
- 가족친화기업 인증심사시 가점 부여
- 근로감독관 교육을 통해 현장점검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시행
- 언론매체를 통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확대

3. 정책효과

-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원활히 지원
-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음
- 취업부모 자녀의 안전한 성장과 건전한 발달을 지원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고용노동부(여성고용과),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 관계부처 :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과제

수행과제명 :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정책과제 발굴 연구

과제책임자 :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41, e-mail : hkchang@kwidimail.re.kr

요 약

공정사회실현을 위해서는 양성평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 그러나 양성평등은 기회균등을 넘어서 조건과 결과의 평등까지 고려되어야 달성됨으로, 공정사회실현을 위해서는 조건의 평등이 전제된 기회균등으로 개념적 확장이 필요함. 즉 기회균등과 함께 약자의 배려, 조건의 평등 그리고 공사영역에서 남녀평등 참여 및 책임분담 등을 포괄해야함.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대표 정책영역은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보장, 정치/사회대표성 제고, 일가정양립 및 돌봄지원, 양성평등·비폭력문화 정착 등이며 전략과제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공공기관 여성관리자임용확대, 파파쿼터제도입, 남성의 가족생활참여 확산·지원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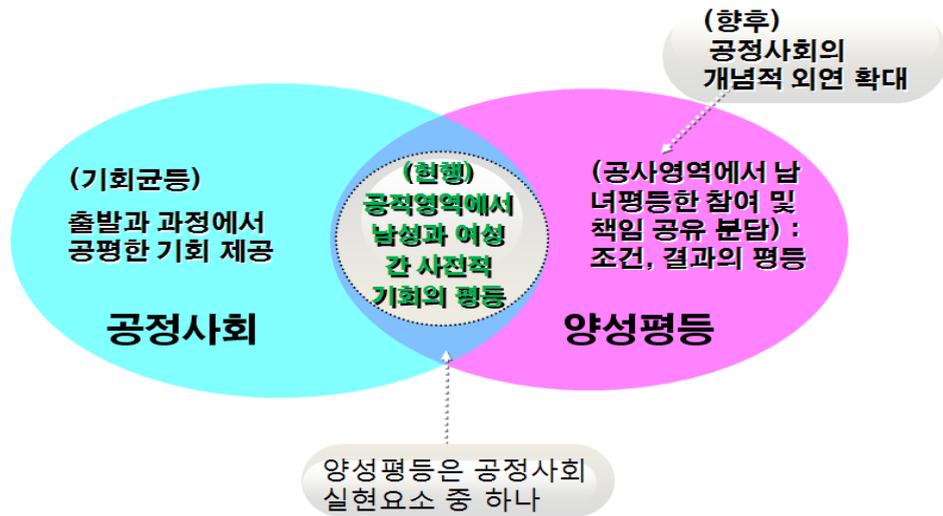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 강조 이후 각 부처에서 관련 정책과제 발굴 추진
- 공정사회 구현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서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정책과제 발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러한 노력은 국가경쟁력 상승과 성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정사회와 양성평등간의 개념 검토를 통한 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과 공정사회와 관련된 양성평등 정책과제 발굴을 시도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은 기회평등 중심에서 실질적 평등까지의 포괄하는 것임. 즉 현행 공정사회의 주요개념인 기회균등뿐만 아니라 조건의 평등과 공사영역에서 남녀평등한 참여 및 책임분담을 강화하는 것임



3. 정책효과 : 공정사회 실질적 구현



-
-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 가족정책국, 권익증진국)
 - ▶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등
-

돌봄 공유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정책 방향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돌봄공유를 위한 성인지적 공공주택정책 방향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1, e-mail : youngkk@kwidimail.re.kr

요 약

2018년까지 150만호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우리의 주거문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돌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정책 및 계획지침이 필요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근대산업사회 이후 공적/사적공간, 도심/주거지, 남성/여성공간이라는 이분법적인 도시 및 건축계획방법은 돌봄의 공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강화하거나 지속시키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에게 전가되어 왔던 돌봄의 책임을 남녀, 가족, 지역사회 공동체, 국가가 공유하고, 일과 개인적 삶, 가족생활이 통합되도록 사회를 재조직해야 함. 물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광의의 주거복지 개념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의 가장 핵심인 보금자리주택정책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롭게 정비할 필요 있음. 2018년까지 150만호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앞으로 우리 주거문화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임.

2. 정책의 추진방향

- 주택정책에 ‘성형평성 추구’라는 목표의 포함
 -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은 도시공간이 젠더중립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어 왔으며,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답습하거나 강화해 왔음. 보금자리주택정책을 비롯한 주택정책은 사회적인 성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성형평성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포함하여야 함.
- 심의 및 협의 절차에 성형평성 개선 내용의 포함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목에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형평성의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포함하고, 제34조에 심의회 및 위원회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을 포함시킴.
 - 우선적으로 간략한 형태의 성형평성의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심의안에 넣어 성인지적인 관점이 반드시 정책의 수립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환류를 위한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단기적인 방향으로 삼고, 향후 보완하여 도시 및 건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을 활용한 정책 소관부서 및 사업담당자의 자체적인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제안함.

- 이외에 단지계획에 과정에서 협의를 위한 관련부서에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이를 협의내용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보금자리주택 신청자격의 소득기준에서 돌봄비용 공제

-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신청자격 조건은 세대소득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맞벌이 가구의 육아 비용을 비롯한 돌봄의 이용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을 정책적으로 차별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 이를 개선하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이나 노인 부양에 대한 비용, 장애인에 대한 돌봄 비용 등 돌봄에 투입된 비용을 고려하는 실질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공유를 지향하는 방법임. 이에 보금자리주택 신청자격의 가구소득에서 돌봄에 사용된 비용을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함.

3. 정책효과

- (1) 돌봄공유가 이루어지는 주거지의 확대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원활해지고 이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임.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2) 바람직한 주거지의 확대는 왜곡된 주거문화를 개선할 것이며 이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계부처 : 토지주택공사, 각지방 개발공사

보육비지원과 보육시설평가제도의 연계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제고

수행과제명 :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과제책임자 : 홍승아 연구위원

Tel : 02-3156-7149, e-mail : hongsa@kwidimail.re.kr

요 약

2009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 평가인증율은 47.9%에 불과하여 평가인증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함. 즉 보육비지원을 보육시설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시설 및 미인증시설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함. 이를 통하여 보육시설 평가제도의 효과성 제고와 동시에 보육서비스 질제고를 추구할 수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정부의 보육비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비지원정책을 보육시설평가제도와 연계시켜 실시함. 보육서비스의 질제고를 위해 보육비지원을 보육시설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시설과 미인증시설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2. 정책의 추진방향

보육비지원정책을(시설지원 및 이용자지원) 보육시설평가제도와 연계시

켜 차등적으로 제공

- 현재의 지원방식에서 이용시설간 차등을 두는 보다 세분화된 지원표 마련 필요함
- 평가체계와 평가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강화
- 평가인증후 사후관리 강화(분기별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 등)

3. 정책효과

- 정부의 보육비지원정책의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참여 독려로 시설 및 서비스의 질 향상
- 취업부모 자녀의 안전한 성장과 건전한 발달을 지원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보육기반과)
▶ 관계부처 :

보육비지원정책의 취업부모조항 확대 및 서비스이용 강화

수행과제명 :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과제책임자 : 홍승아 연구위원

Tel : 02-3156-7149, e-mail : hongsa@kwdimail.re.kr

요 약

취업부모에 대한 보육지원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부모에 대한 보육비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서도 부모의 취업여부를 보육시설 이용조건, 우선 입소요건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취업부모의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며, 동시에 이들의 서비스 이용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여성들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함. 동시에 아동에게는 안전한 성장과 건전한 발달을 지원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보육비지원정책의 취업부모조항을 현재의 부부소득 합산소득 중 25% 차감방식에서 50% 차감방식으로 개정하여 대상폭을 대폭 확대(현재의 보육비지원정책 중 취업부모지원 예산은 0.59% 정도임)
- 단, 취업부모는 2차 소득자의 근로시간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예, 주 30시간 이상 등)
- 서비스 이용시 부모의 취업여부를 보육시설 이용조건, 우선입소 조항에 포함

3. 정책효과

- 취업부모의 자녀양육 비용부담을 완화
-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여성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
- 취업부모 자녀의 안전한 성장과 건전한 발달을 지원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청소년역량개발과)
▶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보육예산의 지역 여성 경제활동 촉진 효과 제고 방안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과 지역 여성경제활동
과제책임자 : 이택면 연구위원 Tel : 02-3156-7167, e-mail : onbike@kwidimail.re.kr

요 약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주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하는 보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할애된 예산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지방정부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2005년에서 2009년간 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그보다 더 가파른 보육료 지원 예산의 증가가 있었지만 이것이 지역 25세이상 39세 이하 여성들의 취업 증가를 동반하지 못했으며, 2008년 기준 보육예산을 더 많이 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의 경활참여 확률 격차가 보육관련 예산을 평균 수준만큼 쓴 지역과 다를 바 없었음.
- 이같은 분석 결과들은 지방정부의 보육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여성의 취업 인센티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취업한 여성의 보육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개발해야 함(시간연장보육, 시간제 보육 등).
- 영아전담 시설(영아 수용인원 10인 내외) 확충, 기존시설의 영아 보육 역량 강화 지원, 등 영아보육을 활성화시켜야 함.
- 아이돌보미 이용료는 대폭 낮추면서 돌보미 활동수당은 높이는 등 아이돌보미 사업의 취업모 친화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정을 통해 취업한 한부모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 지원에 있어서는 소득구간의 정밀한 재설계와 구간별 지원액 감소폭 재조정 등을 통해 취업 인센티브를 유지해 주어야 하며, 취업여성 뿐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여 구직등록을 하거나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수혜자로 등록한 여성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직장보육에 있어서는 근로자 개인이 보육시설을 선택하여 아동을 맡긴 후 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로부터 환급받게 하고 정부는 사업주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등, 직장보육 확대 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함.
- 지역 별로 보육 공급률과 이용률을 파악하여 잠재 보육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현존 시설 지원과 국공립 시설 중심의 신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타 지역보다 더 높은 비율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비 지출 예산 증가를 구성 요소별로 분해했을 때, 보육부문의 예산 증가 뿐만 아니라 여성 취업지원 및 인력개발 관련 예산의 동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함.
- 중앙정부의 보육예산 국고 보조 비율이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보다 더 탄력적으로 정해져야 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비율을 더 높여야 하고, 현재 서울과 비서울지역으로만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고보조비율을 지역별로 더 세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 보육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역 보육의 현안을 파악하고 각 부처별 보육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정책 추진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 이를 위해 지방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해야 함. 보육위원으로는 보육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취업지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육지원 사업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 촉진 효과가 중요한 심의 의제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3. 정책효과

- 지방 정부 보육예산의 효과성 제고
-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평가 및 발견
- 광역자치단체가 보육관련 지출을 통해 지역의 여성 노동시장을 활성화할 조건 발견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산전후휴가 실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여성의 출산후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선 방안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1, e-mail : youngkk@kwdimail.re.kr

요약

취학전 자녀의 양육과 직장 내의 경력관리 및 경제적 보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련 비용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므로 산전후휴가 실시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방안을 마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6조 제2항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평등권) 및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현실적으로 출산 및 육아의 부담 때문에 취업 중 일정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상당 부분 열약한 육아여건에 기인함
 - 출산 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과 관련하여 현행 조세제도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출산 이후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세제지원을 통해 출산으로 인해 초래되는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취학전 자녀의 양육과 직장 내의 경력관리 및 경제적 보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련 비용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므로 산전후휴가 실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요구됨
 - 육아휴직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여성근로자가 불가피하게 동(同)휴직을 신청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최대 1년으로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월 50만원의 충분하지 못한 급여로 경제적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음.
 - 반면 산전후 휴가의 경우, 육아휴직에 비해 여성근로자가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고 급여도 비교적 커 기초적인 모성보호와 출산장려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임

2. 정책의 추진방향

- 산전후휴가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 현행 산전후휴가 제도는 사업주가 동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이를 사업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 여성근로자와 사업자 간에 이해관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산전후휴가급여의 일정비율에 대한 세액공제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육아관련 급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예상됨
 - 산전후휴가급여를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대체인력의 고용을 위해 지출한 추가적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지원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과 유사하게 동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해당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는 방안¹⁾이 대안이 될 수 있음

3. 정책효과

-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중단 완화
- 출산을 전후하여 여성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출산후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충실하게 실현
-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공헌할 수 있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여건의 조성에도 공헌할 것으로 예상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1) 실질적으로는 필요경비를 중복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여성의 출산후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선 방안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1, e-mail : youngkk@kwidimail.re.kr

요약

실질적인 육아의 공동책임자인 남성 배우자들이 육아책임을 분담하고, 육아기간에도 여성 근로자의 근무경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도의 확산을 지원하는 세제를 마련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6조 제2항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평등권) 및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현실적으로 출산 및 육아의 부담 때문에 취업 중 일정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상당 부분 열약한 육아여건에 기인함.
- 출산 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과 관련하여 현행 조세제도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출산 이후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세제지원을 통해 출산으로 인해 초래되는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실질적인 육아의 공동책임자인 남성 배우자들도 육아책임을 분담하고, 육아기간에도 여성 근로자의 근무경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유연근무제도 시행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실시
 -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확대적용 하는 방안: 전체 직원 중에서 유연근무제도를 일정 비율 이상 시행하는 회사에 대해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이미 중소기업인 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함. 조특법 제7조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기업·중기업·수도권지역 여부 등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음.
 - 둘째, 대체인력의 인건비 일부의 필요경비 인정. 직원의 유연근무제도 선택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할 경우, 일자리 나누기 지원 규정과 유사하게 추가 고용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해당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 조특법 제30조의3은 공제범위를,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으로 규정함.

- 유연근무제도 시행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 육아기간 동안의 시간제 근무 보장 및 그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인정 또는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유연근무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이를 가족친화기업으로 보고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 기업과 유사하게 조세 지원. 조특법 제8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함.

3. 정책효과

-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중단 완화
- 출산후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충실하게 실현
-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공헌할 수 있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여건의 조성에도 기여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의 생활화와 저출산

수행과제명 :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 김혜영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9, e-mail : khyoung222@kwidimail.re.kr

요 약

한국사회의 경우 평균혼인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출산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되는 미혼여성의 비혼 사유 및 가족의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향후 저출산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출산 정책은 비단 인구정책의 차원을 넘어 취약가족지원정책에서부터 모든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구축 및 확대와 같은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결과 결혼이나 자녀출산으로 인한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의 중단을 경험한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에게 직업활동과 자녀출산 및 양육을 양자택일적인 선택으로 귀착시키는 사회환경요인의 제거는 매우 주요한 저출산 해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자녀 기혼여성에 대한 직장차별과 관련된 미·기혼여성들의 높은 동의도와 미혼여성들 가운데 결혼과 함께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일가정양립 가능한 직장환경의 조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정책의 추진방향

- ① 일가정양립제도의 지속적 확대와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로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일상화에 맞추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과 정규직 중심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대다수 여성의 일자리가 단시간,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실제적인 정책의 수혜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② 유자녀 기혼여성에게 불리한 기업의 고용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대다수 미혼여성들은 그들의 직장여건이 기혼여성으로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요소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혼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③ 결혼 및 출산 등 가족생활을 배려하는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강한 자녀중심주의와 책임성을 내재화한 여성일수록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실제 기혼여성들의 경우에는 이같은 책임성이 높은 경우에 오히려 출산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치관이 높은 여성들의 경우, 결혼 및 출산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결혼 후에는 상당한 돌봄 부담으로 다가오는 양가적 형태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명 및 출산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지역과 사회가 함께 돌보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통해 출산율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④ 가족형성기 결혼 준비 및 주택마련 자금 지원방안
결혼적령기를 넘긴 미혼여성들이 선호하는 결혼지원 정책으로 결혼준비

를 위한 유급 휴가제도나 신혼부부 주택마련 지원, 결혼자금 융자,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및 가족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결혼기회 제공관련 정책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유인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같은 정책지원은 공공부문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민간기업 등 직장단위로 직원복지 차원에서 적극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정책효과

- 결혼유인 동기 강화를 통한 출산을 제고
- 일가정양립기반 확산을 통한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 결혼 및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보건복지부(저출산정책과)
▶ 관계부처 : 고용노동부(고용평등과)

자녀간병휴가제도의 도입

수행과제명 :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과제책임자 : 홍승아 연구위원

Tel : 02-3156-7149, e-mail : hongsa@kwidimail.re.kr

요 약

조사결과 취업부모의 가장 큰 애로점 중 하나는 아픈자녀의 보호와 돌봄의 문제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본인의 휴가나 근로시간의 배려(time-off)를 통해 자녀를 직접 돌볼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희망하였음. 따라서 자녀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병원치료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자녀간병휴가제도를 통해 취업부모들이 자녀질병시 돌볼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자녀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병원치료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자녀간병휴가제도를 통해 취업부모들이 자녀질병시 돌볼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함.

2. 정책의 추진방향

기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내에 가족간호휴가제도가

강제조항이 아니라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자녀간병을 위한 제도적 특성에 따라 가족간호휴가제도와 별도로 자녀간 병휴가제도를 도입함.
- 자녀간병휴가제도의 내용은 자녀당 연간 3-5일의 유급휴가로 규정함

3. 정책효과

- 취업부모의 아픈 자녀 보호와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일가정양립을 지원
- 취업부모 자녀의 안전한 성장과 건전한 발달을 지원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여성고용과)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장시간근로 야근문화 개선에 정책적 역량 선택과 집중

(「가족친화사회 환경 조성」 및 「일가정양립 촉진」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수행과제명 : 성평등 실천 국민 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I): 직장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 안상수 연구위원

Tel : 02-3156-7188, e-mail : ahnss@kwidimail.re.kr

요 약

가족친화제도 및 일-가족 양립제도가 가정영역으로의 실질적 파급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촉진 지원법」이나 「가족친화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정시퇴근문화조성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직장인 대상으로 성평등 실천 국민 실태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가족친화제도의 효과가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 등의 조직효율성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직장인 남성의 가사활동영역에 대한 참여나 일-가족 양립에 실질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나 육아휴직제,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집중되고 있어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남녀 직장인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

하기 때문에 보임.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촉진 지원법」이나 「가족친화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시퇴근문화를 강조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권장 사항이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활용 정도가 부진할 뿐만 아니라 일반화되지도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가족친화제도나 일가족양립 촉진 관한 법률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대다수 기업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거나 기업의 현실을 잘 모르는 처사로 평가절하 될 가능성도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새로운 제도도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장시간근로를 조장하는 야근문화를 개선에 정책적 역량을 모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직장인의 장시간근로를 조장하는 퇴근/야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종이나 분야별로 취약한 곳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일과시간 활용을 유도하고, 관련된 기존 제도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들을 마련되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야근 및 장시간근로 취약분야 실태 조사
 - 업종이나 분야, 부서별 업무 부담률을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업무 집중 부서의 R&R(role&responsibility) 모델 개발 보급
 - 야근이 만성화된 조직내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효율적으로 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 기업규모별 적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선택 가능성을 높여함.

-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평가시 출퇴근시간 관련 기준강화
 -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시 배점 기준 상향 조정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촉진에 관한 지원 법률에서 야근문화개선 관련 조항 강화

-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야근 및 퇴근시간 관련 실태를 점검 및 목표 설정

- 퇴근 이후의 시간활용에 관한 캠페인
 -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되더라도 이것이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관한 프로그램과 연동이 필요
 - 근로자 가족 프로그램 보급 및 활성화
 - 건전한 퇴근문화에 관한 직장인 수기 공모 및 가사활동참여 모범사례 공모 추진
 - family day를 확대 실시

- 기업체 야근 및 초과근무수당지급 기준의 표준화 및 현실화방안 마련
 - 정시퇴근제의 강화는 필수불가결한 야근이 초과근무를 저해될 수 있고, 음성화되어 꼭 필요한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하고서도 근로자들이 오히려 야근이나 초과수당이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현실화해 주고, 표준화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

- 수당의 현실화는 기업차원에서 정시퇴근을 주도하는 효과를 갖게 할 것으로 기대

- 공공기관 관리직 및 임원 대상 야근 및 초과근무시간 피크제 도입
 - 상명하복의 직장 문화에서는 상사의 퇴근시간이 부하직원의 퇴근시간과 직결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일정한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초과근무시간 피크제 도입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중심으로 검토 필요
 -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 제도를 먼저 실시하여, 일반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3. 정책효과

- 장시간근로문화가 개선되어, 직장인의 일-가족 양립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등의 기업 및 조직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임.

- 기업·직장영역에서의 가족친화제도의 효과가 가정영역에서의 남성의 가사활동 참여 및 일-가족 양립에 실질적 파급효과를 갖게 될 것임.

-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심의 가족친화제도 및 일가정양립제도의 혜택이 일반 남녀 직장인에 게도 고루 돌아 갈 것임.

- 직장내 성평등 실천을 유도하며, 가정영역에서의 성평등 실천으로 연계 가능성을 높일 것임.

-
-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여성고용과),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 ▶ 관계부처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여성정책관련 담당)
-

직장보육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여성의 출산후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선 방안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1, e-mail : youngkk@kwidimail.re.kr

요약

사업자에게 영유아가 있는 여성의 숙련노동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직장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을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것에 대해 조세혜택 부여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6조 제2항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평등권) 및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현실적으로 출산 및 육아의 부담 때문에 취업 중 일정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상당 부분 열약한 육아여건에 기인함
- 출산 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과 관련하여 현행 조세제도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출산 이후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2. 정책의 추진방향

- 직장보육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직장보육시설의 신축·구입을 위한 비용은 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에 비해 지출의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충분한 조세혜택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제도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의 신축·구입에 대한 조세혜택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세혜택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동(同)시설을 신축·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직장보육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의 7/100에서 10/1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

<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세액공제액 = ①+②+③

-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 20% (중소기업은 30%)
- 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20% (중소기업은 30%)
-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①·②를 선택하지 않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MAX(④, ⑤)
- ④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소급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 40% (중소기업은 50%)
- 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공제율²⁾ (중소기업은 25%)

※ <표>와 같이 직장보육시설의 신축·구입에 비해 훨씬 사업관련성이 크고 지출의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개발활동의 경우 시설투자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일반적인 지출액만 고려하더라도 지출액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직장보육시설은 취득금액, 특히 동(同)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의 매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를 세액공제로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들에게 지출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제율 = MIN(3%+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수입금액)×50%, 6%)

□ 조세감면 적용에 있어서 최저한세 적용의 배제

- 현행 조세특별제한법에서는 다양한 조세감면이 적용되어 감면후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조세감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있어(조특법 제132조), 직장보육시설의 취득금액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음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중소기업의 동(同)세액공제 전액과 대기업의 동(同)세액공제 중 내국인의 석·박사 인건비분 세액공제액 등과 같이 과세관청이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 일부 조세감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어 제한 없이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직장보육시설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를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동(同)시설을 신축·구입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도록 함

□ 세액공제 대상 지출범위에 토지매입금액 포함

- 현행 제도는 직장보육시설의 신축·구입을 위한 지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에게 투자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토지의 매입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에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토지를 임대 후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³⁾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줄이도록 함

3) 실제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골프장의 개발지(코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임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즉 동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영유아보육법 상 “영유아” 정의 규정의 개정
 -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정의한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해석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해당 기업에서 동(同)시설의 신축·구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⁴⁾
 -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정의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또는 단순히 “취학전 아동”으로 개정하도록 함

3. 정책효과

-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중단 완화
- 출산후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충실하게 실현
-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공헌할 수 있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여건의 조성에도 기여

4)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을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同)보육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의 법률해석 여부에 따라서 동(同)세액공제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특정 시설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과 6세 이상의 취학전 아동을 동시에 보육하는 경우 동(同)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인 보육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로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동(同)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이를 영유아만을 보육하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동(同)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아직 없지만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의하면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전자와 같이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세액공제를 기대하고 시설을 신축·구입한 사업자가 이후 동(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 정의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법령해석의 불일치로 인한 사업자의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유사 법령간의 개념정의 조화⁵⁾

-
-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 ▶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5)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자녀양육공제의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

취업부모의 부모시간을 위한 근로시간과 조직문화 지원

수행과제명 :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과제책임자 : 홍승아 연구위원

Tel : 02-3156-7149, e-mail : hongsa@kwidmail.re.kr

요 약

취업부모의 취업특성별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이들이 일가정양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모함. 연구결과 정규직 취업부모의 경우 시간부족, 근무일정 조정의 어려움, 시간적 유연성 부족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나타났음. 따라서 유연한 근로시간, 정시퇴근제 정착 등의 제도적 개선, 조직문화의 개선을 통하여 이들의 부모시간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다양한 취업부모의 서비스 이용요구에 기반한 서비스 및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자녀양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함. 정규직 취업부모의 경우에는 장시간근로와 시간적 유연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시퇴근제 정착,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 등을 지원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유연근무제도 확대
- 정시퇴근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업체별 퇴근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 및 결과보고
- 자녀아플 때 등 응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time-off)를 제공
- 지역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야간보육, 휴일보육을 제공

3. 정책효과

-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시간을 지원하며, 응급상황시 자녀양육을 지원
-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시간을 지원하여 여성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
- 취업부모 자녀의 안전한 성장과 건전한 발달을 지원

-
-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고용노동부(여성고용과)
 -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청소년역량개발과)
-

가족정책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제도화 방안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가치 추정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1, e-mail : youngkk@kwidimail.re.kr

요 약

돌봄 필요도가 낮은 노인의 경우 유급 돌봄서비스보다 가족에 의한 돌봄서비스로부터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돌봄 필요시간이 적은 노인에게 대한 가족 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보다 더 높게 인정할 것을 제안함. 이는 돌봄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보험재정의 건전화에 대해 가족에 의한 돌봄서비스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임.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는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부에서 일부 제도화 됨.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방문요양서비스의 예외조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1~3등급 인정)로 판정된 노인과 동거하는 가구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가서비스를 공급하는 요양기관의 근로자로 계약하여, 요양기관 소속으로 하루에 90분 이하에 한하여 동거하는 가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동일주소지의 동거가족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며, 그 시간이 하루에 90분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요양보호사의 경우와 모든 조건이 같음.
 - 가족요양보호사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으며, 해당 제도에 의해 공급되는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가족요양비는 방문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 벽지에서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됨.
- 재가 및 시설급여와 별도의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에 의한 요양을 인정한 제도임.
 - 가족이 요양보호자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으며 가족요양비는 2008년 현재 전체 급여비의 0.13%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유급 노인돌봄서비스 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서비스를 인정하는 제도는, 급여와 서비스 등 모든 조건이 유급 돌봄서비스의 경우와 무차별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상대적으로 돌봄 필요시간이 적은 노인에 대한 가족 돌봄서비스를 유급 돌봄서비스의 시장가격보다 더 높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노인 돌봄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서 추정된 가족에 의한 노인 돌봄서비스 가치는, 돌봄 필요시간이 연간 180시간 이하일 경우 시장가격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돌봄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의 경우 가족에 의한 돌봄서비스로부터 유급 돌봄서비스보다 높은 효용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함.
 - 이와 같은 결과는 돌봄노동의 가족화라는 측면, 즉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와 무관하게 돌봄노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돌봄 필요시간이 적은 노인에 대한 가족 돌봄서비스는 시장가격보다 더 높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3. 정책효과

- 경증 노인에 대한 돌봄의 경우 중증 노인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가족 돌봄 제공자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급노동의 가족화가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즉 무급노동의 가족노동시장에서 지위가 낮은 여성을 돌봄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가족으로 복귀시켜 주부화함으로써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한다는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음.
- 가족에 의한 돌봄서비스의 제도화는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회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돌봄 필요시간이 적은 노인에 대한 가족 돌봄서비스를 시장가격보다 더 높게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 한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족에 의한 돌봄서비스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활동과 가족 돌봄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유연노동제(flexible work hours)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필요할 것임.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세대간 이해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자원봉사활동에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프로그램 적용)

수행과제명 : 남녀노인의 세대갈등 현황 및 세대통합 방안연구

과제책임자 :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53, e-mail : lsy4026@kwidimail.re.kr

요 약

자원봉사에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합함으로써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을 늘리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음.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 노인방문봉사, 정보화에 뒤쳐진 노인들이 정보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활용교육을 포함시키고 노인들도 학교 상담교사로 활용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자원봉사 활동에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포함시킴으로써 자원봉사 활동과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활성화하고자 함.
-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노인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림. 특히 청소년 봉사점수에 노인방문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청소년과 노인 만남에 동기를 부여함.
- 노인들은 청소년에게 관심도 있고 이들을 위해 봉사할 의사도 있으나 현재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청소년 봉

사프로그래를 개발함.

2. 정책의 추진방향

청소년 노인방문 프로그램

- 중고등학생이 노인복지관, 양로원, 교회, 이웃의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봉사를 1인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장려함. 학교가 지역의 복지관, 양로원, 이웃의 노인들과 연계하여 노인들에게 말벗, 이야기 하기를 중심으로 세대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함.
- 휴대전화, 컴퓨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이웃 노인들이나 조부모들에게 정보기술에 가르치는 것을 봉사점수로 인정함.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영역에 중고등학교 상담가로 활동 지원

- 고학력, 전문직 출신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소재 학교, 방과후 교실, 출신학교, 교회,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업, 교우, 가치관 등 문제에 대한 상담 기회를 부여. 특히 학교현장에 체벌이 금지되면서 상담, 상담인력의 배치와 육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노인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지혜로운 상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을 확보하고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3. 정책효과

- 세대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세대간 이해 증진
- 청소년과 노인의 봉사활동을 이용한 세대 협력

-
- ▶ 주관부처 : 교육과학부(학교운영지원과)
 - ▶ 관계부처 : 각급 교육청(학교운영지원과)
-

여성 돌봄자와 여성 노인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강화

수행과제명 : 남녀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53, e-mail : lsy4026@kwidimail.re.kr

요약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자녀세대, 손자녀세대)의 돌봄의 교환 시 주된 갈등의 이유 중 하나는 세대 간 도움을 주는 방식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 세대의 가치관 과선호하는 돌봄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돌봄과 관련된 가족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세대 간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상담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결과 적지 않은 수의 응답자들이 가족 내 세대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돌봄을 주는 방식에 대한 불만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음. 따라서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돌봄을 주고 받는 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고부관계 또는 모녀 간 갈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여기에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돌봄에 대한 의무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여성돌봄자

와 여성노인의 가족 내 세대 갈등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돌봄의 교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경감시키거나 예방하여 가족 관계를 향상시키고 세대 간 통합을 도모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현재 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센터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부관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
- 고부관계,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가 강연 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혹은 모녀가 함께 참여하는 역할교환극, 영상상편지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함.
-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여성돌봄자와 여성노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복지관 등을 드나들지 않는 노인들을 위해 다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함. 구청에서 발간하는 구정홍보지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를 이용할 수 있음.
 - 새로운 고부, 모녀 관계를 설명하는 만화 등을 통한 소책자를 배포할 수 있음. 시어머니의 며느리와의 관계, 어머니의 딸과의 관계를 위한 지침 등을 포함할 수 있음.

3. 정책효과

- 가족 내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 가족 내 돌봄의 교환에 있어 갈등을 줄이고 돌봄을 좀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통합위원회

행정적 노인연령 조정 (자활근로 연령/연금 수급 연령 상향화를 중심으로)

수행과제명 : 남녀노인의 세대갈등 현황 및 세대통합 방안연구

과제책임자 :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53, e-mail : lsy4026@kwidimail.re.kr

요 약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의 기준 연령도 변화할 필요가 있음. 행정적으로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되어있으나 이제 생산주체로서 간주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로 되어있는데 이를 68세나 70세로 상향조정하여 근로능력이 있으나 수입이 없는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이 되는 연령 기준은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회환경에 맞추어 행정적 노인연령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노인의 행정적 연령은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 국민연금법에는 노령연금 수급기준을 60세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현행 60세나 65세를 노인기의 시작

으로 하면 노인기가 너무 길어지게 됨. 행정적으로 노인이 되는 것은 한편으로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돌봄의 대상이 되고 다른 편으로는 연금이나 교통비 같은 복지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것임.

- 65세부터 노인으로 간주되면서 자활근로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생활기반이 없는 노인의 경우 오랫동안 생활고에 시달리게 됨.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노인형 일자리로 월 20만원 급여를 7개월 동안만 지급하여 현실적인 생활보장책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자활근로 같이 생활대책이 되는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연령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반면에 60세부터 연금수급을 시작하게 되면 연금수급기간이 길어서 국가 예산이 부담을 주게 됨. 따라서 행정영역에 따라 노인이 되는 연령을 적절히 조정하여 노인의 복지와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전반적으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자활근로 연령
- 현재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자활근로의 자격은 65세까지임. 자활근로 자격을 68세 혹은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면 생활대책이 없는 노인 중 아직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
- 현재 기초생활대상자로 한정되어 있는 자활근로 자격을 65세 이상인 경우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나이가 들수록 재산이 줄어드는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연금수급 등 복지혜택 적용 연령

- 현재 60세로 되어있는 국민연금개시연령도 65세로 상향조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소진을 예방함. 또 65세로 되어있는 교통비 지원도 상향조정함. 혹은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은 65세로, 고소득층은 그 70세로 하는 등 기준 연령을 차등화하는 방법도 있음.
- 그러나 이 경우는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경우이어서 당사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3. 정책효과

- 특정 수입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소극적인 복지의 대상이 아닌 생산활동의 주체로 간주하게 되어 이들의 자존감과 생활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음.
- 기초생활대상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넉넉지 않은 65세 이상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
- 교통비 지급과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춤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소진을 예방함.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 관계부처 : 행정안전부(성과후생관)

다문화정책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 역량 기반 활동 활성화

수행과제명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과제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Tel : 02-3156-7158, e-mail : yskim@kwidimail.re.kr

요약

이주의 경험으로 통해 획득한 언어·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활동, 경제활동은 이민자의 빈곤화,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다문화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간 한국사회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언어·문화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사회활동, 경제활동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본격적인 지원이 필요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결혼이민자는 이주의 경험으로 통해 서로 다른 언어·문화적 배경에 대한 역량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 사회활동, 경제활동은 이민자의 빈곤화,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다문화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함.
 - 일례로 2009년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설된 직업훈련과정 중 절반이 언어·문화역량을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으로 취업률도 80.2%에 달해, 일반 직업훈련과정보다 월등히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은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 언어·문화역량을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시장성이 높은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주요 외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양성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이 주요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소수 언어나 언어 외에 결혼이민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그간 한국사회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언어·문화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사회활동, 경제활동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본격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언어·문화적 역량을 활용한 직종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언어·문화적 역량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
 - 한국과 본국을 연계한 국가간 사업, 본국 문화를 한국사회에 접목하거나 거꾸로 한국문화를 본국으로 접목하는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창업과정을 지원하며, 경영과 판매 지원하는 창업 지원 창구 마련
 - 일부 시도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형태를 통한 문화적 역량 개발 및 활용

기회 확대

-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이나 문화관광해설사와 같이 양국간의 언어와 문화자본을 필요로 하는 직종 개발, 직업훈련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적 역량에 기반한 직종 개발, 직업훈련 전담 기관 지정, 인력 배치
 - 새일센터를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서비스 전담기관으로 지정
 - 전담인력 배치,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적 역량에 기반한 직종 개발, 직업훈련 기능 부여,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이중언어교육 분야 전문인력 개발

- 통·번역사, 상담사, 한국어 또는 아동양육지도 방문지도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 개설, 전문가수준의 업무를 담당할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고급과정 개설
- 초기 정착기 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 서비스는 출신국 결혼이민자가 제공하고 이 단계를 거친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방안 제도화
- 다문화가족 자녀나 중도 입국 외국인자녀들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직종 개발, 직업훈련 실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군별로 순회지도하는 방안 제도화 검토
- 출신국가에서 취득한 학력이나 경력, 자격 인정, 연계 방안 강구
 - 출신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교육과정, 자격증 제도 등에 대한 비교연구 실시
 - 국가간 학력 및 자격증 상호인정 수준 및 범위 제도화
 - 학력 및 자격증 인정에 필요한 추가 교육기회를 제공 검토

□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기회 확대**

- 언어·문화적 역량 기반 자조모임, 시민단체 활동, 지역사회활동, 경제활동 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 사회적 관계망 갖출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열려 있는 평생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지원
 - 전문대학 및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점인정제도 활용 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취업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전문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기회 제공

□ **언어·문화적 역량의 사회적 활용 촉진을 위한 브리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고 이들의 존재를 통해 다문화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결혼이민자와 한국사회 간에 다양한 방식의 교류와 이를 통한 긍정적 상호작용 촉진 기회 제공
 - 내국인과 결혼이민자가 함께 하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단순히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자가 아니라, 고유의 언어·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지역 주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 마련
 - 지역사회에서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브리지 프로그램 개발, 추진 지원

※ 호주 '화합을 이루는 삶 프로젝트'(Living in Harmony Project)

※ 상호 교류의 예: 농촌사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어 교실 운영, 필리핀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에서 지역사회의 한국가족 자녀들에게 영어연극 연습에 참여 기회 개방

3. 정책효과

- 결혼이민자의 사회주체로서의 위상 확립 및 능동적 사회통합 촉진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기반 확립
- 다양한 언어·문화 역량을 기반으로 한 사회 개발 가능성 확대

-
-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고용노동부
 - ▶ 관계부처 : 국무총리실 , 사회통합위원회(세대분과팀), 지방자체단체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문화 역량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강화

수행과제명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과제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Tel : 02-3156-7158, e-mail : yskim@kwidmail.re.kr

요 약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족 내에 존재하는 언어, 문화적 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이중적 언어,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언어·문화역량 교육의 기본방향을 확립하고 해당 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들어 학교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 등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또는 대상자 중에 이들을 포함시켜) 부모의 모국어 습득 기회를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그간 거부당해온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받게 되는 사회적 지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의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고 기본적인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

- 결혼이민자 자녀의 특수성에 적합한 언어·문화역량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해당 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모국어 교육의 방향과 목표 정립

- 한국사회의 주류언어인 한국어와 주요 외국어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영어, 중국어 등 이외의 언어 교육은 소위 ‘소수언어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 다음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소수언어 교육은 그 대상별로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적이 서로 비교됨.

<표> 소수언어 교육 유형

교육유형	대상	일차적 목표	적절한 추진체계
모어교육	해당 언어 배경의 부모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	정체성 확립, 가족간 의사소통, 가족관계 증진	이주민과 자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 단체
언어를 통한 국제이해교육	일반 아동, 성인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 배양	다양한 배경의 아동, 성인이 함께 이용하는 기관, 단체
외국어교육	일반 아동, 성인	해당 언어에 대한 기능적 유능성 확보	일반 기관, 단체

-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자녀의 정체성 발달과 가족관계 형성을 우선적 목표로 함.
- 이러한 점에서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교육의 목표를 ‘글로벌인재 육성’으로 설정하면서 기능적 유능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정책 방

- 향은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이러한 목표가 언어, 문화적 자질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중층적 장애요인에 직면한 채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에게는 현실성이 낮음.
 - 기능적 유능성은 해당 언어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일상적 생활 속에서 언어를 자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정책의 목표로 설정되기에는 무리가 있음. 현재와 같이 기능적 유능성만을 강조하는 정책 목표 하에서는 자칫 장애요인이 비교적 적고 기능적 유능성 실현에 있어 비교적 우호적 환경에 있는 소수의 가족만이 주요 대상 집단이 되고, 중층적 장애요인에 직면해 기본적인 여건 마련도 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은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낮은 위치를 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모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기능적 유능성 이외에 정체성 발달과 가족관계 형성을 교육의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임.

□ 교육 성격에 맞는 추진체계 정비

- 국제이해교육이나 외국어교육과 같이 일반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학교와 같이 다양한 배경의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이 적절함.
- 학교와 같이 다양한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기관마다 그 수가 제한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그것도 언어 배경을 공유하는 자녀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명확한 구분을 통한 일종의 ‘낙인 효과’까지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어서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모어 교육은 특정 언어 배경 아동 이용자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고 학교와 달리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함. 일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결혼이민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이나 이주민 지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

- 현재로서는 이중언어교육에 전문성을 지닌 강사를 양성할 만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적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콘텐츠도 미비한 상황에서 교육이 시행되고 있음.
- 강사,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 교육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 기반 마련
 - 모어강사 내지 이중언어강사 양성기관을 지정, 강사양성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중언어강사 대상 재교육 과정
 - 다양한 언어 포괄, 자녀들의 연령대나 언어 구사 수준 등에 따른 교육과정 정교화
 - 기본적으로 연령대별, 해당언어 구사 수준별로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가급적 세분화된 교육과정 개설 지원.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이것이 어렵다면, 교육 수요가 가장 높은 연령층, 교육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언어 구사 수준에서 시작해 점차 이들의 발전단계를 따라가면서 교육과정을 확대해가는 것이 대안
 - 특정 언어에 대한 교육 경험 축적을 위해 언어별 모어교육센터기관 내지 이중언어교육센터기관 지정, 교육 과정 체계화, 교재 및 교육콘텐츠 개발 기능 부여

□ 교육기회 확대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내지 모국어 교육이 일부에서 시

행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지역적으로, 언어별로 교육 기회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결혼이민자 언어, 문화적 배경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특정 언어, 문화 배경 결혼이민자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매우 드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중언어교육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를 포괄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임.

※ 일본 효고켄이나 오사카후: 특정 언어 사용자 집중 분포 지역, 학교에 특정언어 전담 교·강사 배치, 특정 언어 사용자 산재 지역에는 센터기관에서 강사 파견하거나 전담 교·강사가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근 지역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자원 연계 체계 통해 접근

- 특정 언어 배경 결혼이민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언어를 강사 배치
- 해당 언어 배경 결혼이민자가 적은 주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당 언어 배경 부모의 자녀가 재학 중인 인근의 학교 등에서 이를 함께 활용

- 결혼이민자가 수적으로 많지 않은 언어에 대해서는 광역단위의 센터 기관을 지정해 센터 기관에서 강사를 확보하고 강사를 필요로 하는 주변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등에 파견하거나 온라인 교육 활용

□ 중도입국자녀의 언어·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및 활동 지원

- 중도입국자녀의 특수성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
 - 부모 사이의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족 내에서 이중적 언어,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통상의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달리 중도입국자녀나 외국인 아동들은 성장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이중적 언어, 문화적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소위 ‘뿌리가 옮겨 심어진’ 경험을 한 이들임.
 - 이주 후에도 가족 내에서는 언어,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외국인 아동과

- 비교해도 부모의 재혼과 이주로 인해 가족 내외의 제반 환경에 있어 보다 전면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상당한 혼란에 직면하기 쉽고 학업성취나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 이러한 성격을 지닌 이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한국사회에서 최근 들어 시도되고 있는 통상적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모어교육 접근과는 달리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수한 접근이 요구됨.
 - 개별 언어별로 제2언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베트남어 신장을 위한 한국어교육’, ‘중국어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
 - 특정 국적 출신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아동 집주지역의 학교를 통해 해당 언어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언어, 문화적 역량을 토대로 한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 추진
 -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의 대상 범위를 중도입국자녀까지 확대
 - 언어, 문화적 역량에 기반한 사회활동, 경제활동 분야, 진출 지원 체계 확립
 - **중장기적 차원에서 다중적인 언어, 문화 배경을 위한 이들을 위한 교육 전문가 양성**
 - 대학교육 차원에서 이중언어교육, 모국어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전공 과정 개설되도록 지원

3. 정책효과

-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가족 관계 활성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문화적 역량 발달 기회 제공
- 중도입국자녀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 대응력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능동적 사회통합 가능성 제고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정책과)
▶ 관계부처 :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위원회(세대분과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 기초 확립

수행과제명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과제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Tel : 02-3156-7158, e-mail : yskim@kwidimail.re.kr

요 약

다문화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나 자녀가 문화적 특수성을 토대로 각종 활동을 펼치면서 능동적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의 정책 역시 문제 중심의 사후적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다문화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이주민의 문화적 특수성은 이주민 개인이나 이주민 공동체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크며,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나 빈곤화 등의 부정적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도 올릴 수 있음. 특히,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사회, 경제적 문제가 보다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전환기에 접어든 한국사회로서는 이주민의 문화적 특수성을 토대로 다문화사회가 긍정적, 생산적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한국사회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다문화사회’를 모토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화적 특수성을 개인의 삶과 가족관계, 자녀의 성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화를 지향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모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언어·문화적 자질을 활용한 직업분야를 포함시키는 등 다소 전향적인 접근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지극히 주변적인 개별 단위사업 차원에 불과할 뿐 전반적인 정책 기조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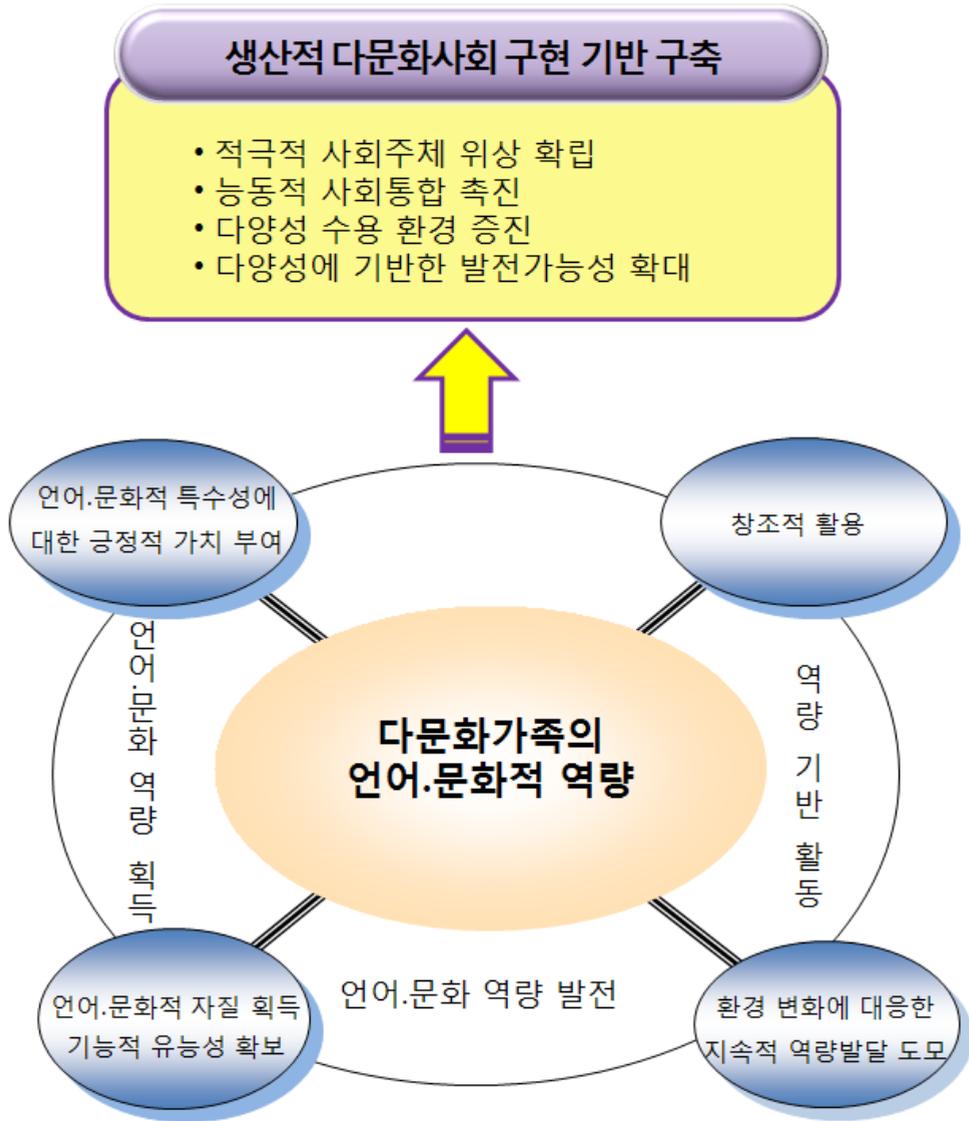
- 주요 이민국가는 물론이고 한국과 유사하게 지극히 제한적 차원에서만 이민을 개방하고 있는 일본 등지에서도 정부와 지자체, 학교 등을 중심으로 이민자의 문화적 특수성을 부정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주류사회로의 동화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를 전환해 특수성을 긍정적 자질로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개인적, 사회적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재정립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민자나 자녀가 문화적 특수성을 토대로 각종 활동을 펼치면서 능동적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 역량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역량이 갖는 본질적 가치에 주목하고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언어·문화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 기본적 정책 방향



<그림>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역량과 생산적 다문화사회의 구현

□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한국사회의 동화만을 지향하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함.
 - 두 법 모두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또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사회 환경 조성,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투명하며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수사를 벗어나기는 힘들.
 - 이러한 정책 기초가 유지되는 한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긍정적 자질로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현재 일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녀 대상 이중언어교육, 언어·문화적 역량을 활용한 취업 지원 등도 정책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시행되다가 중단될 가능성이 큼.

-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긍정적 자질로 인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 협약이 발효되고 이주민의 정착에 대한 제도적 틀이 보다 유연하게 전환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이주민과 그 가족 전반의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다문화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다른 별도의 법률, 가칭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할 만함.

□ 정책의 다문화지향성 점검

-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들의 특수성을 결핍론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지원의 대상으로 위치 지우는 경향이 강함.
 -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공존의 질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야 하는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움.

- 정책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핍론적 관점에서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과 직접 관련된 법률, 정책계획의 다문화지향성을 검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관련 법률과 정책계획에서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어떠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들의 특수성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계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는 체계 마련.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적합한 기구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책의 다문화지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점검을 실시하며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다문화지향성 점검대상 정책은 일차적으로는 관련 법률과 정책계획에서 출발하여 일선 서비스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함.

3. 정책효과

- 적극적 사회주체로서 다문화가족의 위상 정립
- 언어·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가족의 능동적 사회통합 촉진
- 문화적 다양성, 다문화사회의 전개를 수용하는 사회 전반적 환경 조성
- 다양성에 기반한 발전 가능성 확대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 :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정책과), 사회통합위원회(세대분과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수행과제명 :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 사용 및 세대간 전수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Tel : 02-3156-7158, e-mail : yskim@kwidimail.re.kr

요 약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내에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언어는 실종된 채 한국어만이 사용되고 있음.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다양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언어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국무총리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이 일상 가족생활 속에서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함께 사용하는 이중언어 가족으로 자리잡아야 함.
- 그러나 영어, 중국어 등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주요언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는 다문화가족 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한국인 부부가족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만이

가족언어로 사용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언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이처럼 다문화가족 내에서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가 사용되지 않는 데에는 자녀의 언어 발달에 대한 염려 등 이중언어 사용과 관련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중층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다문화가족이 이중언어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다양성이 한국인부부 가족이 가질 수 없는 다문화가족만의 강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내에서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다문화가족지원 기관을 비롯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이중언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목표 또한 현재와 같은 ‘글로벌 인재 육성’과 같은 도구적 가치에 경도되기보다는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는 2009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엄마나라 언어 배우기 프로그램 실시’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 단계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중언어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가 양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소수언어의 유창성 증진을 목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프로

그램과 교사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교육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가 모두 글로벌 인재라는 정책목표 앞에 줄서기를 해야 되는지도 짚어봐야 함. ‘글로벌 인재’라는 수사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소수에게만 실현가능한 목표일 뿐,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어머니와 어머니나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건강한 자아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될 것임.

3. 정책효과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
- 우리사회의 다양성 증진
-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 증진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과),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정책과)
▶ 관계부처 : 국무총리실, 국가브랜드위원회

다문화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적합한 언어·문화자원 개발 방향 설정

수행과제명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과제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Tel : 02-3156-7158, e-mail : yskim@kwidimail.re.kr

요 약

세계화의 추세와 한국사회의 구체적 이주 양상을 고려할 때, 일반적 차원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언어, 소수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소수언어, 소수문화에 대한 역량을 발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정책을 집중시키는 것이 적절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주요 외국어만이 긍정적 자질 내지 자원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역량을 발전시키는 노력만이 활발한 현실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주의 동향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에는 중국과 베트남을 위시한 동남아 국가 출신자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이와 함께 문화질서에 있어서도 한국사회에서 주요 외국어로 인정받는 언어 이외의 소수언어, 소수문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주요 외국어 사용자로 알려진 이들 중 상당수는 사실상 소수언어, 소수문화 사용자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며 주요 외국어를 기반으

로 한 역량을 구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언어, 문화적 요소간의 가치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 차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교정되기 어려움.
- 자녀 대상 모국어교육이나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활동 지원 등에 있어 정책적 지원 없이는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언어, 문화적 역량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문화적 다양성이나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에 대한 주류사회의 태도 형성을 위한 홍보에 있어 일반적인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소수언어, 소수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소수언어, 소수문화 배경을 지닌 이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일차적 목표 설정
- 자녀 대상 모어 교육 강사인력 양성, 교육 과정 개설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이나 언어·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 및 취업 지원 등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소수언어, 소수문화와 관련된 과정, 교육 프로그램 우선 개발
 - 문화관광체육부 혹은 한-아세안 센터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접근이 어려운 소수언어, 소수문화에 대한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수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을 위한 별도의 사업 추진
 - 소수언어·소수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활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 도서관이나 학교 등에 다문화 코너, 다문화 자료실 등 설치
- 언어, 문화의 사회적 위상에 따라 해당 역량의 발전, 구현을 저해하는 장

애요인도 차이가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충분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주요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자료나 인적자원으로서의 전문성 제고와 같은 기술적 차원의 지원
-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활동을 통해 가치를 구현할 기회도 거의 없는 소수언어, 소수문화: 언어,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환경 조성+ 실질적 활동 기회 제공 ⇒ 언어, 문화적 특수성이 개인적 자질,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 가치 구현 가능성

3. 정책효과

-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라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역량 강화
- 다양한 언어, 문화 자원의 가치 고르게 발전
- 소외계층 다문화가족에 적합한 지원 방향 설정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 관계부처 : 지방자치단체

언어·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사회 환경 촉진

수행과제명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과제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Tel : 02-3156-7158, e-mail : yskim@kwidimail.re.kr

요 약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문화적 특수성을 토대로 각종 활동을 펼치면서 능동적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특수성을 포함해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다문화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이주민의 문화적 특수성은 이주민 개인이나 이주민 공동체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크며,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나 빈곤화 등의 부정적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도 올릴 수 있음. 특히,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사회, 경제적 문제가 보다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전환기에 접어든 한국사회로서는 이주민의 문화적 특수성을 토대로 다문화사회가 긍정적, 생산적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동화, 한국인화 중심의 정책 기조 전환 필요
 - 한국사회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다문화사회’를 모토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화적 특수성을 개인의 삶과 가족관계, 자녀의 성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화를 지향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정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해야 하나, 이것이 곧 자신의 언어·문화를 버려야 하는 당위성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 더욱이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고유한 언어·문화를 버리고 완벽하게 한국인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음.
 - 국내외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일방적 동화 보다는 출신문화와 주류문화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결혼이민자를 위시한 이민자의 심리적 안녕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

- 결혼이민자나 자녀가 문화적 특수성을 토대로 각종 활동을 펼치면서 능동적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특수성을 포함해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다양성이 존중되고 양성 평등한 다문화가족 환경 조성
 - 일상생활 속에서 결혼이민자가 모국어를 사용할 경우 자녀의 한국어 발달에 지장을 줄지 모른다는 염려가 팽배해있으나,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을 통한 긴밀한 자녀와의 관계형성은 자녀의 한국어 구사능력보다 월등히 중요한 문제임. 결혼이민자가 자신이 질적으로 우수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로 자녀와 충분히 교감할 때만이 자녀에게 다양한 언어적 자극이 제공되어 언어 발달이 촉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한 정서 발달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임.

-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언어·문화적 교감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언어 발달은 물론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
 -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한국인 남편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부인의 언어·문화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인 남편 교육 추진
 -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와 한국 문화가 일상 가족생활에서 유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 즉, 한부모-한언어 원칙(One Parent-One Language) 과 같은 가족규칙 개발, 확산

- 성인지적 가족언어규칙, 가족문화규칙 개발 필요
 - 남성결혼이민자의 언어, 문화적 배경은 가족 문화의 핵심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데 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문화와 모국어는 가족 내에서는 ‘사라진 언어’, ‘사라진 문화’일 뿐이며 기껏해야 결혼이민자 ‘개인의 문화’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함. 이러한 현실에서 한부모-한언어 원칙 등의 가족언어규칙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큼.
 - 다문화가족의 현실에 적합한 접근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언어, 문화를 가족 문화의 구성요소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주류사회 인식 전환 전략 강화

- 다문화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예방하고 긍정적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환경이 전제되어야 하나, 오랜 기간 민족적, 문화적 단일성에 기초한 사회, 문화질서를 유지해온 한국사회로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존재를 계기로 가시화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해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점은 다문화가족이 언어, 문화적 역량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주민의 문화적 특수성과 사회 전반적인 다양성에 대한 주류사회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주류사회의 태도에 관해서는 소위 '다문화 이해교육'차원에서 접근되어 왔음.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이 현실적으로 이주민이나 주요 출신국가·지역에 대한 단순한 정보만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어 이주민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주류사회의 우려를 전환하는 데에는 별 효과를 미치지 못함.
 - 다양성이 소수자 개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학교교육, 사회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서도 단순 이해교육 차원을 넘어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접근을 강화해야 함.

3. 정책효과

-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긍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족 환경 조성
- 언어·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가족의 능동적 사회통합 촉진
-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사회 전반적 수용 환경 조성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 관계부처 :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정책과),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위원회(세대분과팀), 지방자치단체

여성복지/아동·여성 안전



아동성폭력 예방 관련 지역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여아 안전 강화

수행과제명 :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II):

여아가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개발

과제책임자 : 이미정 연구위원

Tel : 02-3156-7154, e-mail : mjnglee@kwidimail.re.kr

요약

여아가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성폭력 예방을 강화해야 함. 여성아동지역 연대의 활동을 내실화 하여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위협에 대비하는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 발생이 빈번해지며 아동성폭력에 대한 우려와 예방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
- 지역 차원의 아동 안전 환경과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안전의 아동성폭력 예방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아동, 부모, 교사의 역량 강화가 중요함. 이들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과 홍보,

체계적 교육 제공이 중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지역 아동안전 강화를 위해서 아동·여성지역연대 활성화
 - 첫째, 각 지역연대에 실무를 담당할 조직을 구성함. 지역연대의 역할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시하여, 지역연대 내에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마을지킴이단이나 쟁점별 솔루션팀, SOS팀 등 각 지역에 맞는 조직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둘째, 지역연대가 수행할 사업 아이템 개발이 필요한데, 경상남도의 마을지킴이단 활동이나 전라북도의 방과후 나홀로 아동 지원과 같은 것을 지역연대의 사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지역연대 활동의 공간 범위 설정이 중요한데, 마을·골목단위의 범위 설정은 사업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셋째, 지역연대 활동과 관련된 매뉴얼이 제공된다면 활동이 수월할 것임. 매뉴얼은 공통적인 부분과 지역 특색과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공통적인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을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역 특수성과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음.
 - 넷째, 시군구 단위로 지역연대가 활성화되어야 함. 시군구 단위에서 구심점이 되어야 할 상담소 등이 없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연대할 가능성이 큼.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성폭력, 친족성폭력, 성매매문제같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함.
 - 다섯째, 광역시도와 시군구 지역연대와 정부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 시도와 시군구 간 연계는 사업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며, 중앙 정부와 지역연대간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간 조직이 필요한데, ‘여성·아동 안전 중앙지원단’에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여섯째, 참여기관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다양한 기관 간 신뢰는 지역연대 활성화의 주요 변수로 참여기관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개인이 바뀌어도 사업수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아동의 안전지도 제작 참여를 통해 안전 환경에 대한 아동 의식 강화
 - 초등학교 안전과 관련된 교육과정 내에서 아동이 안전지도 제작에 참여하게 함.

안전지도 제작 방식은 교사연수를 통해서 전달하고 확산함. 4-6학년생 6-7인을 1조로 구성하여, 지도 제작 전 범죄예방 및 위험공간 판별에 대한 교육을 제공.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아동별로 안전공간 선택 및 위험도 판별을 근거로 지도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역할을 부여함. 지도 제작 결과를 조별로 공유함.

- 아동이 판별한 안전·위험 정보를 기호화하여 제작된 지도를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아동과 지역 주민이 범죄공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함.
- 안전지도에 근거하여 아동을 위한 안전 통학로를 제안함. CCTV, 지구대, 방법대 등 아동 보호와 감시기능이 유지되는 공간으로 연결된 안전통학로를 제안할 수 있음.
- 안전지도 제작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및 위험 공간에 CPTED 기법을 도입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아동성폭력 예방 주체로서 부모·교사 역량 강화

- 아동성폭력 예방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아동과 아동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부모, 교사임. 부모는 아동성폭력 위험 및 예방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교사는 교육청 및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후 교과과정에서 학생에게 전달해야 함.
-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평가되고 개선되어야 함. 기초적이며 중요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아동, 부모, 교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신문방송을 고려해야 함.

- 피해발생 시 학교측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함.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음. 교사, 교장, 학교 평가에 있어서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가 아니라 효과적 대처방식을 고려한다면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임. 학교 측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는 유인체계가 제공되어야 함.
- 많은 아동이 피해 경험을 주위 어른에게 알리지 않고 있음. 아동기 성폭력 피해의 은폐는 성인기 트라우마로 나타나 공공보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음. 장기적·예방적 관점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알리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연구의 축적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아동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또래 집단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기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은 청소년기나 성년기에 성폭력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기에, 학교나 가정은 이러한 행동을 아동기의 장난으로 넘기기보다는 문제 행동임을 확실히 교육시켜야 함.

3. 정책효과

-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아동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아동의 안전지도 제작 참여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 환경에 대한 의식 강화
- 부모 및 교사의 아동교육을 통해 아동의 위험 대비 능력 배양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권익기획과)
▶ 관계부처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우울증 검진 확대 방안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V)-우울증 검진 확대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김영택 연구위원

Tel : 02-3156-7177, e-mail : ytk@kwdimail.re.kr

요 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의 심각성을 감안한 조기 검진 및 치유 노력이 불충분하므로 중년기 및 노년기에 해당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2차 검진 항목에만 포함되어 있는 우울증 검진을 1차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여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우울증 검진은 중년기 및 노년기에 해당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2차 검진 항목에만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울증은 개인환경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이며 주기적인 기간 동안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증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 여성의 우울증이 남성보다 심각하다. 특히 2005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여성이 남성보다 2.1배 더 많았으나, 2009년에는 2.3배로 나타나 우울증 질환을 지닌 남녀의 비율 차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여성이 겪는 사회환경적 경험이 남성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성별 우울증 발병율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생애과정에서 여성은 산후우울증을 경험하고 우울증이 시작되거나 심화되며, 중년기에 이르면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역할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 발병율이 높아져 남성과의 격차는 더 커진다.

- 우울증이 자살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건강관련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지난 2주간 연속적으로 우울감을 경험한 집단이 준거 집단보다 자살 생각을 경험할 확률이 7.623배 높았다. 그러나 정신보건관련 예산은 낮고 우울증 예방 관련 대책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2. 정책의 추진방향

- 중년기 및 노년기에 해당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2차 검진 항목에만 포함되어 있는 우울증 검진을 1차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여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여야 한다.
 - 향후 우울증 검진에 신뢰성과 실용성을 갖춘 평가도구 개발과 우울증 평가 후 상담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소요예산 추계
 - 산후우울증 및 우울증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연령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연령기준인 40세를 35세로 낮추었을 때 전업주부 대상으로 우울증 검진 비용추계를 실시하고 연령 조정이 되지 않은 현행기준인 40세를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 연령 조정 후 전업주부 대상으로 우울증 검진 비용추계 실시 결과 2007년 기준 1차 검진 대상인원 수검율이 50%대이고 2차 검진 수검율이 약 30%인 점을 고려하여 가상시뮬레이션에서 가장 근접한 1차 검진 수검율 50%와 2차 검진 수검율 25%의 대상인원과 가상수검율을 적용하면 총 소요예산은 3,726,435,050 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 암 검진을 제외한 일반건강검진의 예산 집행액 3,272억 중 약 1%이다.
- 연령 조정이 되지 않은 현행기준인 40세를 기준으로 2007년 기준 1차 검진 대상인원 수검율이 50%대이고 2차 검진 수검율이 약 30%인 점을 고려하여 가상시뮬레이션에서 가장 근접한 1차 검진 수검율 50%와 2차 검진 수검율 25%의 대상인원과 가상수검율을 적용하면 총 소요예산은 35,976,069,905원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08년 일반건강검진의 예산 및 지급 총 예산 집행액 3,272억 중 약 10%에 해당된다. 그 동안 일반건강검진 비용이 모두 신체적 검진 비용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신적 건강검진 비용으로 전체 비용 중 10%의 소요예산은 결코 크지 않은 비용이다.

3. 정책효과

- 우울증 조기 발견으로 정신보건 향상 및 자살 예방
- 정신보건센터 서비스 확대 및 개선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가족의 부부관계 증진과 빈곤 되물림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수립

수행과제명 :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대책 -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가족·문화 부문>

과제책임자 : 변화순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40, e-mail : hwasoon@kwidimail.re.kr

요 약

본 연구는 빈곤가족의 가족갈등 예방과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사회안전망 평가 및
구축을 위해 부부관계성 차원과 청소년 자립준비도 측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
가족패널자료와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양적연구 결과를 통해 빈곤이 부
부관계성과 청소년의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 보다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이나 동반
활동,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가정폭력 등의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나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가족내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족의 가족갈등을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
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서 빈곤가족의 특성을 가족관계와 갈등의 측
면에서 분석함. 또한 빈곤의 세대간 이동 흐름을 학력과 빈곤 탈피를 위
한 자립준비도 의지의 측면을 분석함.
- 경제위기는 특히 취약계층 가족에게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가족 내 역

할과 관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이혼 및 별거, 가정폭력 등을 야기함. 남편의 실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파탄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성의 미취업 역시 이와 동일한 경향을 추론하게 함.

- 취업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환경에서는 가정 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짐. 부부간 역할 분담과 동반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부부관계와 가정 유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관계의 불안은 가족내 자녀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가짐.
- 빈곤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빈곤의 지속성, 장기성, 빈곤대물림의 고리를 끊거나 약화시키는 변화가 요구됨. 자녀들의 빈곤대물림 약화를 위해서는 자녀 스스로 빈곤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나 태도와 같은 문화적 성향 획득이 중요한 변수임.

□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청소년이 처한 가정환경 요인(빈곤, 부모-자녀관계, 가정폭력, 지역사회환경)의 개선이 중요함. 이를 위해 부부관계성 개선에 대한 정책개발 또한 중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가족관련 사회적 안전망 정책 제언

- 취약계층 “가족” 범위 확대 필요.
 - “저소득층 문제가정”은 정상가족에 대응한 비정상가족의 이미지를 가지는 한계를 가짐. 이는 이는 현재의 다양한 가족 변화 논리와 맞지 않음.
 - 부부공동 생계분담과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다양한 가족”, 혹은 “유기체로서의 가족”에 대한 구체적 개념정의 필요함.
 - 개념 정의 작업은 구체화하되, 체계를 나누어 각 정책사업의 수준으로 재정리되어야 함.

- 사회복지 영역의 가족 접근은 문제중심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료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임.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정책대상자 역시 아내폭력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어 안전망으로서의 제한성을 보임. 그러므로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접근이 요구됨.

- 보편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
 - 이용자 수, 교통, 시설유형 등을 고려한 적정 개소수의 시설 배치가 각 지방자치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설계·설치되어야 함.
 -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및 지원시설 이외의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급체계의 중심이 필요함.
 -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당수가 도시에 몰려 농·어촌 지역의 가정폭력의 피해자 가족의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서비스의 질의 지역 격차 심각함.
 - 사회복지관은 사업의 표준화가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 있으나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시설,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아직 사업 표준화 정도가 낮아 시설과 지역에 따른 서비스 편차 큼.
- 사전적 예방사업과 사후 치료적 차원에서의 부부관계성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 가정건강가정지원사업은 “가족의 안전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이라는 목표 설정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며 예방적 성격을 가지며, 가족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사전적 예방의 사업 뿐만 아니라 사후치료적 차원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부부관계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정책의 홍보가 필요함.

- 협의체 구성에 대한 실질적 권한부여 필요.
 - 관련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지역 관리하는 방안 마련함.

- 가족관계 증진에 있어 위험과 실질적인 욕구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노인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등 가족유형에 따른 분류에 따른 가정 폭력에 대한 이해 및 예방교육과 더불어 가족활동, 가족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원망 등의 다차원적인 욕구조사가 실시되어 프로그램 개발로 연결 되어야 함.

- 소관부처 일원화와 관련기관의 연계방안 활성화 필요.
 - 가족안전망 정책을 관리·규제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두 정부 부처로 나뉘지면서 규제·지원·감독의 역할이 두 군데로 나뉘면서 네트워크의 효과성 미흡, 또는 전달체계의 통합성이 부족하므로, 소관 부처 일원화와 유관기관간의 연계 활성화가 요구됨.

□ 청소년의 자립준비와 안전망 정책 제언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목적과 효과를 거두기 위한 코디네이터 위상 강화.
 - 지역별 조정협의 모임이나 기구를 통한 조정역할 수행으로 사업대상자 중복을 방지하고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기관 연결 시도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위상을 강화함.

- 신빈곤층의 대두로 빈곤탈피를 위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서비스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지만 사회통념상 빈곤한 계층-차상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을 포함시켜야 함.

- 빈곤탈피를 위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종합적 접근을 위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지원.
 - 정부의 단위시설 중심적 서비스제공 패러다임에서 지역공동체시스템 구축 지향의 패러다임 전환에 상응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원내용과 지원방식 필요함.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위스타트 마을만들기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이 교육-복지-건강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지역사회통합지원망 구축의 목표를 설정해야 함.

- 유사사업 통합·조정을 위한 부처별 유사사업을 1개 부처로 통합 운영.
 - 소속부처에 따라 동일사업의 지원 금액, 평가내용과 평가방식이 다르며, 동일한 서비스대상에 대한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개 부처로 통합 운영하는 방식 요구됨.

3. 정책효과

□ 가족관련 사회적 안전망 정책 제언

-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가족” 개념정의를 통해, 문제 중심적이고 단편적 가족정책의 한계를 벗어난 유기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서비스 제공하고 가족의 다차원적 욕구 실태 파악

- 가족정책 사업의 지역별, 시설별 편차를 줄이고 대상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보편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하여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사전예방적 성격의 가족정책 사업 패러다임 구축

- 중복된 가족정책 사업과 아동청소년 정책에서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간 네트워킹 향상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서비스대상 확대로 인한 세대간 빈곤의 대물림 차단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 간의 종합적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과)
 - ▶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 여성의 가족·문화, 노동, 복지, 건강과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수행과제명 :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과제책임자 : 변화순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40, e-mail : hwasoon@kwdimail.re.kr

요약

경제위기 이후 삶의 질이 열악한 취약계층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분절적이고 수동적이며 사후적인 사회안전망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들의 가족문화, 노동, 복지, 건강 등 전체 삶의 영역 모두를 아우르는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이며 예방적인 방안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경제위기는 어느 계층보다 취약계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들의 전반적인 삶은 더욱 악화됨. 특히 여성의 가족·문화, 노동, 복지, 건강 영역은 남성보다 더욱 열악한 위치에 있어 가정 내 빈곤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개인의 삶의 질을 지원하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젠더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다양한 생활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개선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함.

- 최근 정부의 휴먼뉴딜 정책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인적역량 강화를 중시

하고 있음.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직면한 상이한 생활영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우선적 인적역량 개발 및 다차원적 방향의 사회안전망 개선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음.

- 취약계층 여성의 가정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가정 내외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다중역할은 부부관계성과 자녀의 자립도를 약화시킴.
- 경제위기는 남성배우자의 실업 혹은 부재로 이어짐. 이에 여성가구주 가구와 여성한부모가구의 증가를 야기하였으나, 경제활동 여성의 대다수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2차 노동시장에 있으므로 인해 취약계층 여성의 빈곤화는 지속되고 있음.

□ 취약계층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다양한 삶의 영역(가족·문화, 노동, 복지, 건강)에서의 변화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사회안전망 모색이 필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가족문화관련 사회적 안전망 정책 제언

- 보편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근성 확대 필요
 - 이용자 수, 교통, 시설유형 등을 고려한 적정 개소수의 시설 배치가 각 지방자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설계·설치되어야 함.
 -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및 지원시설 이외의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급체계가 필요함.
- 사전적 예방사업과 사후 치료적 차원에서의 부부관계성에 대한 중요성 부여
 - 건강가정지원사업은 가족의 안전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이라는 목표 설정과 더불어 예방적 성격을 가짐. 이에 더하여 사후 치료적 차원의 중

요성을 부각하면서 부부관계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정책의 홍보가 필요함.

- 소관부처 일원화와 관련기관의 연계방안 활성화 필요
 - 가족안전망 정책을 관리·규제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서 규제·지원·감독의 역할이 두 부처로 나뉘어짐. 이에 따라 네트워크의 효과성과 전달체계의 통합성 등에 문제가 있어 소관부처 일원화와 유관기관간의 연계 활성화가 요구됨.

- 빈곤탈피를 위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서비스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필요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지만 사회통념상 빈곤한 계층과 차상위 계층의 아동·청소년을 모두 포함시켜야 함.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종합적 접근을 위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지원
 - 정부의 단위시설 중심적 서비스제공 패러다임에서 지역공동체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패러다임 전환방식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원내용과 지원방식이 필요함.

□ 노동관련 사회적 안전망 정책 제언

-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 자발적 퇴직의 경우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실직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필요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의 경우 생애 취업이력에 변화가 많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전망으로는 이들의 근로빈곤

위험을 보호하기 어려움. 따라서 자영업, 1인 기업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보완적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이 절실히 필요함.

○ 제2 사회안전망 도입 고려

- 노사정 및 시민사회 간의 긴밀한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실업 후 단기간의 소득보장 기능인 기존의 고용보험(실업급여)이 직업훈련도 포함된 생활 지원형 취업연계형태의 부조제도로 확대 발전될 필요가 있음.

□ 복지관련 사회적 안전망 정책 제언

○ 비경제활동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대상 적용 방안 및 지원범위 확대

-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협업 배우자 포함) 간 노년기 빈곤과 불평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대상 적용 방안과 지원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여성가구주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급여 향상 및 제도 개선

-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율과 빈곤갭비율 분석에 의하면 노인 남성가구주는 빈곤선 근처에 분포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빈곤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나, 노인 여성가구주가는 빈곤선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아래에 분포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만으로는 빈곤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음. 따라서 장기적으로 여성가구주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 향상이 필요함.

○ 맞벌이 및 저소득가구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화와 소득안정을 위한 보육 서비스 개선

- 영유아 가구 중 맞벌이 혹은 저소득가구 여성의 지속적인 노동참여 지원과 노동공급시간을 증가하기 위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건강관련 사회적 안전망 정책 제언

- 위기집단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의료지원 기간 및 범위 확대
 -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문제는 생계와 주거와 함께 일차적인 위기상황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기존의 긴급지원제도의 의료지원은 단기적이고 1회성 지원의 성격을 띠며. 따라서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의료지원은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유지와 증진, 더 나아가 빈곤 탈출을 위한 역량강화로서 지역사회와 공공·민간의료기관 및 단체를 연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확대방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취약계층 전업주부의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건강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3. 정책효과

- 가족문화, 노동, 복지, 건강영역을 아우르는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 사회의 주체로서 취약계층 여성의 삶의 질 제고

- 취약계층 여성가구주가구의 가족기능 및 관계성 강화와 빈곤의 세대이전 차단

- 교육훈련과 생활비지원이 겸비된 제2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도입 촉진

- 맞벌이 및 저소득가구 여성의 소득안정을 위한 보육서비스 환경 조성
- 비경제활동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
- 취약계층 및 위기집단에 대한 의료의 접근성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

-
-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 ▶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각 지자체 등
-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과 건강안전망 개선방안

수행과제명 :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건강부문

과제책임자 : 김영택 연구위원

Tel : 02-3156-7177, e-mail : ytk@kwidimail.re.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후 사회계층 이동에 따른 건강상태의 변화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분석의 결과의 핵심은 1차 경제위기 후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계층 하락에 따라 건강상태가 나쁨으로 변화하는 확률이 높고, 그들의 삶의 질 또한 낮아 보다 효과적인 건강안전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후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와의 분석이 결여되어 왔음. 경제위기 이후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사회 환경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건강상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함이 필요함.
- 젠더적 관점에서 패널자료(panel data)를 활용하여 경제위기 후 사회계층의 변화와 건강상태의 변화를 추적해야 함.

- 심층면접을 통한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취약계층의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젠더적 관점에서 사회계층의 변화와 불건강 상태로의 변화와 관련된 실증분석과 더불어 경제위기를 경험한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경제위기에 따른 건강상태의 변화를 파악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취약 계층 관련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의료)안전망 관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위기집단에 대한 기존 긴급지원제도의 의료지원 기간 및 범위 확대
 - 기존 의료지원을 최대 2 회로 제한하기 보다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과 같이 기간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최소 6개월까지는 의료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기간과 함께 고려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의 경우 의료지원 기간 동안(6개월) 의료지원비용(600만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케어(care)와 모니터링은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 및 단체와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와 지방 기관 및 단체의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연계서비스는 여성 빈곤층과 이들 가구, 특히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기집단의 1차 의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재원확보를 통해 의료지원의 기간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건강보험 진료비 확대방안

- 취약계층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급여범위를 확대가 필요함. 특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방안(현재 외래 본인부담률 15%, 본인부담 상한선 6개월 120만원) 혹은 기존 대불금제도(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을 무이자로 대불하고, 대불기간 동안 균등상환), 본인부담보상제도(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그 초과 금액의 50%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공공보건의료자원 활용 및 확대방안

- 기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종합적인 건강매니저 서비스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빈곤여성 가구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확대방안

-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 후 취약계층 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시되는 현 시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보다 많은 취약계층의 전업주부에게 일반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더불어 건강보험가입자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중 만 40세 이상 기준을 만 35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함.

□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

-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 후 취약계층 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우울증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우울증 검진 확대 방안으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진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은 경제위기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는 취약계층, 특히 여성에게는 단기적이며 주기적인 우울증 검진을 통하여 우울증에 대한 정신건강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대처 방안 및 치료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임.

□ 저소득층 비만 프로그램 도입

- 이번 심층면접연구에서 여성 중 저소득층 여성의 비만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질적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경제 위기 이후 살이 많이 찼으나,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살을 빼지 못하고 있으며, 비만으로 인해 다른 질환의 악화되거나 신체적 부담이 많다고 하였음.
- 저소득층 여성들의 비만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개입이 지역사회 보건 의료체계속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저소득층 여성건강검진 확대

- 이번 심층면접연구에서 여성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이제까지 생애전환기 건강 검진, 5대 암 검진 대상자라고 통지가 와도 검진 받으려 갈 정신적, 물리적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고 하였음.
- 심층면접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이 받고 싶어 하는 검진은 의료 급여 혜택에 해당 안 되는 것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야간과 공휴일 검진제도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정책효과

- 사회의 주체로서 취약계층 여성의 삶의 질 및 건강 상태 제고
- 취약계층 및 위기집단에 대한 의료의 접근성 향상 및 성별 건강형평성 제고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M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ODA기여 부문 개발: 모자보건

수행과제명 : 북경행동강령 15주년 점검 및 향후과제

과제책임자 : 이선주 연구위원

Tel : 02-3156-7166, e-mail : leesut@kwidmail.re.kr

요 약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와의 연계를 통해 2015년까지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기여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2010년은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며, 동시에 새천년개발목표(Millemium Development Goals: MDGs) 이행 10주년이 되는 해임. 제54차 여성지 위위원회에서는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와의 연계성을 강조함. 본 회의에서는 특히 양성평등 증진 없이는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역설됨.
- 한국은 2009년말 OECD/DAC에 가입하여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바,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를 연계하여 최근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모자보건관련 ODA정책과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모자보건 증진, HIV/AIDS 및 기타 전염병 예방 등 MDGs 달성과 직결된 분야에 재정 지원을 확대
 - 과거에 축적한 경험(보건소 모자보건요원 배치, 산전산후 진찰과 분만 시행, 기생충·결핵퇴치 등 질병관리 인프라 구축, 예방접종사업 및 전염병 관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적 지원
 - 보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영양, 식수, 위생, 고용,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연계지원 확대

- 여성의 생식보건과 관련해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아동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필요
 - ODA 보건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KOICA의 내외적 역량 강화 및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한 향후 보건의료 원조정책에 근거중심의 피드백 강화

- 성 주류화의 국제화를 위하여 정책분야별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다양화하여 정책 전반에 걸친 성 주류화의 확산을 꾀해야 함.
 - ODA 보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ODA 보건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ODA 보건분야에 여성의 욕구를 반영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

3. 정책효과

-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와의 연계로 국제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빈곤퇴치정책에 일조함.

- 수원국 여성들이 경제·사회개발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ODA 정책과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

-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인권 외교를 통한 지구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주관부처 : 외교통상부(개발정책과), 여성가족부(국제협력담당관실)
▶ 관계부처 : 국무총리실(개발협력정책관실),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

2010년도 연구과제명



1. 2010년 기본연구과제 목록

□ 기관고유사업

○ 기본연구사업 (단위 : 천원)					
구분	기본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1	경제위기에 따른 여성고용변화와 향후과제	80,000	'10.1.1~12.31	김태홍	민현주(경기대학교교조교수), 임희정(한양사범대학교 조교수), 김령희(위촉연구원)
2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83,000	'10.1.1~12.31	민무숙	오은진 이시균(객원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3	여성 박사인력의 교육-고용 불일치 실태와 과제 : 녹색성장관련 전공과 기타 전공간 비교	78,000	'10.1.1~12.31	신선미	김중숙,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손정민(위촉연구원)
4 (중점)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100,000	'10.1.1~12.31	홍승아	김은지, 이영미(한남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민정(위촉연구원)
5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비혼여성의 일·가족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100,000	'10.1.1~12.31	김혜영	선보영, 김상돈(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박은정(위촉연구원)
6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85,000	'10.1.1~12.31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
7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추정 : CVM을 이용한 실증분석	76,000	'10.1.1~12.31	조선주	이선행, 우석진(명지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8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적 전략	80,000	'10.1.1~12.31	이선주	최윤정, 정진주(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 연구원 연구위원), 박설아(위촉연구원)
9	여성 장애인 지표개발 연구	70,000	'10.1.1~12.31	전기택	황정임, 김고은(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 대학원 교수), 동제연(위촉연구원), 최민영(위촉연구원)
10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방안 연구	70,000	'10.1.1~12.31	김원홍	이현출(국회입법조사처 정치회의팀장), 배선희(위촉연구원), 전선영(위촉연구원)

○ 연구관련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관련사업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1	2010년 한국의 성인지통계	43,000	'10.3.1~ '11.2.28	주재선	오현경(위촉연구원), 전지영(인턴)
2	대외협력 활성화 사업	148,000	'10.1.1~ 12.31	김은경	김영혜, 윤현주
3	여성정책포럼	35,000	'10.1.1~ 12.31	신선미	강민정, 이현화 최미화, 전성욱
4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인지 적 모니터링	30,000	'10.1.1~ 12.31	윤덕경	고보혜(전남대 법학박사), 김정혜(공익변호사그룹 객원 연구원), 윤정화(국민권익위 원회 연구원), 선민정(위촉연 구원)

○ 연구지원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관련사업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1	간행물 발간	85,000	'10.1.1~ 12.31	김은경	이경식
2	연구성과 관리 및 기관 홍보	119,000	'10.1.1~ 12.31	유희정	신선미, 김은경, 강민정, 이현화, 최미화, 전성욱, 황애리(계약직)
3	연구기획사업	130,000	'10.1.1~ 12.31	신선미	강민정, 이현화, 최미화, 전성욱
4	연구지원 및 고객관리	80,000	'10.1.1~ 12.31	신현식	김미숙, 이정미
5	정보시스템 운영	232,197	'10.1.1~ 12.31	김성배	김성익, 김우현(계약직)
6	지식정보서비스 및 자료실 운영	87,000	'10.1.1~ 12.31	박미현	김경화(위촉연구원)
7	성인지통계정보 시스템 업그레이 드 및 유지관리	430,000	'10.1.1~ 12.31 (5/10)	전기택	주재선, 이정음 (위촉연구원), 박건표(위촉연구원)

구분	연구관련사업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자
8	정보시스템 인프라구축 및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	140,000	'10.1.1~12.31	김성배	김성익
9	여성관련 지식컨텐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50,000	'10.1.1~12.31	박미현	양애경

□ 일반연구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자
1 (중점)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1) : 녹색성장과 여성인력양성방안	100,000	'10.1.1~12.31 (1/3년차)	김태홍	김중숙, 강민정, 박상철(한국고용정보원부 연구위원)
2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IV) :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개선	100,000	'10.1.1~12.31 (4/5년차)	오은진	신선미, 김난주, 양난주(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은영(위촉연구원)
3 (중점)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V): 성인지예산 제도 모니터링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500,000 (359,770)	'10.1.1~12.31 (4/5년차)	김영옥	마경희,김영숙, 이선행,김효선,차인순(국회 여성가족위 심의관), 권순현(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령(서울여성가족재단 초빙연구원)
(-1)	(외부위탁과제 1)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성인지 분석 (위탁기관: 대구카톨릭대학교)	(20,000)	'10.3.1~8.31 (6개월)	김안나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정원 (부산카톨릭대학교 노인요양관리학과 교수) 한정원 (대구카톨릭대학교)
(-2)	(내부위탁과제 1)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 성인지적 분석 및 소요예산 중심으로	(9,960)	'10.3.1~8.31 (6개월)	김영택	김원홍, 김동식
(-3)	(내부위탁과제 2)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사업 예산의 젠더분석	(9,980)	'10.3.1~8.31 (6개월)	정해숙	전기택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자
(-4)	(내부위탁과제 3)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9,820)	'10.3.1~ 8.31 (6개월)	신선미	민무숙
(-5)	(외부위탁과제 2) 돌봄 공유를 위한 성인지적 공공 주택정책 방향: 보금자리 주택 관련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_위탁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 학협력단)	(20,000)	'10.3.1~ 8.31 (6개월)	강미선 (이화여자 대학교 건 축학부 부 교수)	장미현(이화여자대학교 건축 학과), 차은아(UC Berkeley Ph.D. Candidate)
(-6)	(내부위탁과제 4)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과 지역 여성 경제활동	(6,180)	'10.3.1~ 8.31 (6개월)	이택면	
(-7)	(외부위탁과제 3) 무급 돌봄 노동 공공화를 위한 재정 비용 연구 _위탁기관: 한국노동연구원)	(20,000)	'10.3.1~ 8.31 (6개월)	윤자영 (한국노동 연구원 부 연구위원)	
(-8)	(내부위탁과제 5)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가 치 추정	(4,290)	'10.3.1~ 8.31 (6개월)	김영옥	김영숙, 이선행
(-9)	(외부위탁과제 4) 출산 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 지원을 위한 성인지적 세계개선 방안 _위탁기관: 한국세법학회)	(20,000)	'10.3.1~ 8.31 (6개월)	이상신 (서울시립 대학교 세 무대학원 조교수)	전병옥(서울시립대학교 세무 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허 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강사)
(-10)	(외부위탁과제 5)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 연 구 _위탁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 학협력단)	(20,000)	'10.3.1~ 8.31 (6개월)	주소현 (이화여자 대학교 소 비자학과 부교수)	정순희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혜경(이화여자대학 교 소비자학과 교수)
4	성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 착을 위한 연구(III) : 성별영향평 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350,000 (250,000)	'10.1.1~ 12.31 (3/5년차)	김경희	양애경, 문유경, 김돌순, 장윤선, 송치선, 남공윤영, 박기남(한림대 사회조사연구 소 연구원), 류연규(서울신학 대 전임강사)
(-1)	(세부과제 1) 부산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 와 과제 _위탁기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000)	'10.4.1~ 8.31 (5개월)	홍미영 (부산여성 가족개발원 연구위원)	황영주(부산외국어대학교 교 수), 이옥경(부산여성가족개발 원 연구원), 고강인(연구보조)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자
(-2)	(세부과제 2) 대전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 와 과제 _(위탁기관: 대전발전연구원)	(20,000)	'10.4.1~ 8.31 (5개월)	주혜진 (대전발전 연구원 연 구위원)	박노동(대전발전연구원 연구 위원), 심정인(연구보조)
(-3)	(세부과제 3) 경기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 와 과제 _(위탁기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00)	'10.4.1~ 8.31 (5개월)	정형옥 (경기도가 족 여성 연 구원 성평 등·고용연 구부장)	박재규(경기도가족여성연구 원 수석연구위원), 조혜련(경 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원), 이가은(연구보조)
(-4)	(세부과제 4) 전남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 와 과제 _(위탁기관: 전남여성플라자)	(20,000)	'10.4.1~ 8.31 (5개월)	오미란 (전남여성 플라자 정 책 연구 실 장)	김미경(광주대학교 조교수), 박구승(전남여성플라자 팀 원), 최경원(연구보조)
(-5)	(세부과제 5)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 와 과제 _(위탁기관: 제주발전연구원)	(20,000)	'10.4.1~ 8.31 (5개월)	정영태 (제주발전 연구원 초 빙연구원)	강창민(제주발전연구원 연구 위원), 강경숙(제주여민회 책 임연구원, 고인종(연구보조)
5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방안(II) : 여아가 안전 한 지역사회 모델개발	200,000	'10.1.1~ 12.31 (2/5년차)	이미정	윤덕경, 장미혜, 강은영(형사정책연구원 부연 구위원), 김한균 (연세대 법무대학원 강사), 이경훈(고려대 건축학 교수), 한승준(서울여대 교수)
6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 애요인 연구(II) : 직장 생활영역 을 중심으로	200,000	'10.1.1~ 12.31 (2/3년차)	안상수	박성정, 김금미(성균관대학 교학생생활연구소연구교수), 현보라(위촉연구원), 박혜리(위촉연구원)
7	여성가족패널조사 (KLoWF: Korean Longi- 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530,000	'10.1.1~ 12.31 (5/10년차)	이택면	주재선, 김승연, 강석훈(성신여대 경제학교 수), 민현주(경기대 직업학교 수), 박라인(위촉연구원)
8 (중점)	<협동>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 축(IV) :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 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260,000 (85,000)	'10.1.1~ 12.31 (4/5년차)	김이선	정해숙, 이정덕 교수(전북 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 수)
(-1)	(세부과제 1)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 자원사 용 및 세대간 전수에 관한 연구	(49,000)	'10.1.1~ 12.31	김이선	정해숙, 채수홍(전북대교 수), 이은아(국제디지털대학강 사)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자
(-2)	(세부과제 2)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부 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 육지원 사례 연구 _ (위탁기관: 한국교육개발원)	(40,000)	'10.3.1~ 10.31 (8개월)	이재분 (한국교육 개발원 수 석연구위원)	김갑성(호성초등학교 교사), 김선미(중앙대 한국어교육원 시간강사), 김숙이(홍익대학 교 부교수), 이해영(위촉연구원)
(-3)	(세부과제 3)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 태와 정책과제	(46,000)	'10.1.1~ 12.31	양인숙	민무숙, 김선헌(위촉연구원)
(-4)	(세부과제 4)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방 안 : 언어·문화 자원 활용 분야 를 중심으로 _ (위탁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0,000)	'10.3.1~ 10.31 (8개월)	고혜원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상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전희선(위촉연구원)
9 (중점)	<협동>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 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 가 및 향후 대책방안 : 젠더적 관 점의 Human New Deal 정책	200,000 (75,000)	'10.1.1~ 12.31 (1/1년차)	변화순	김영택, 김동식
(-1)	(세부과제 1)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 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 후 대책방안 : 가족·문화 부문	(25,000)	'10.1.1~ 12.31	변화순	김인순, 정수연,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연구위원), 김소현(위촉연구원)
(-2)	(세부과제 2)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 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 후 대책방안 : 미국의 가족·정소 년 부문_ (위탁기관: 미국 EWC, East-West Center)	(25,000)	'10.3.1~ 10.31 (8개월)	최민자 (미국 EWC 교수)	
(-3)	(세부과제 3)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 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 후 대책방안 : 건강부문	(25,000)	'10.1.1~ 12.31	김영택	김동식, 김수연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선임연구위원)
(-4)	(세부과제 4)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 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 후 대책방안 : 노동부문 _ (위탁기관: 한국노동연구원)	(25,000)	'10.3.1~ 10.31 (8개월)	장지연 (한국노동 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부연 구위원)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자
(-5)	(세부과제 5)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 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 후 대책방안 : 복지부문 _(위탁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000)	'10.3.1~ 10.31 (8개월)	여유진 (한국보건 사회연구 원 부연구 위원)	김태완(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수정(동아대 교수)
10 (중점)	삶의질전략단 운영	1,000,000	'10.1.1~ 12.31 (1/10년차)	양애경	김복태, 최유진, 김혜영(여성HRD), 문희영, 나성미 김양호(위촉연구원) 김정미(위촉연구원) 김신희(위촉연구원)

□ 수시과제 연구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자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에 관한 연구	10,000	'10.6.30~ 10.31 (4개월)	이택면	전기택
2	여성친화적 문화시설 조성방안 연구: 공연시설내 보육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7,230	'10.6.30~ 9.30 (3개월)	이수연	김인순, 박지영(신홍대학 강사)
3	가족문제 예방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측정 연구	10,000	'10.6.30~ 9.30 (3개월)	조선주	김혜영(가족정책), 민현주(경기대 직업학 교수), 이선행
4	2010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13,400	'10.6.30~ 9.30 (3개월)	김원홍	김은경
5	낙태행위의 사회경제적 사유 분석과 관련정책 개선방안	7,100	'10.6.30~ 9.30 (3개월)	이미정	김영택, 김동식
6	북경행동강령이행 15주년 점검 및 향후과제	10,000	'10.6.30~ 10.12 (3개월13일)	이선주	변화순, 박성정
7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 여성분야 ※ 통일정책연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수의 기관이 공동출자 및 공동참여 하는 공동연구임.	5,000	'10.5.31~ 12.20 (7개월)	김원홍	김경희
8	베이비붐 세대의 남녀특성 비교 연구	4,400	'10.11.1~ 12.31 (2개월)	김영란	주재선
9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발굴 연구	8,100	'10.11.5~ 12.31 (2개월)	장혜경	김혜영 황정임 김형준(명지대교수)

□ 협력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1	「양성행복 정책포럼」 구성 및 창립 기념 토론회	5,000	'10.11.1~12.10 (1개월10일)	김경희	양애경, 김둘순 송치선

□ 외부공동연구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1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10.6.1~12.31 (7개월)	양애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	한국사회변천과 여성 ※ 제15회 여성주간기념 정책세미나 : 여성가족부	'10.7.1~7.19 (1개월)	김태홍	한국사회과학협의회
3	2010년 가족실태조사	'10.6.15~9.15 (3개월)	김혜영 (가족정책센터)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가정학회 과제)
4	타부처 직업능력개발 훈련평가 사업	'10.9.1~12.31 (4개월)	김태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여성가족부 과제)

2. 2010년 수탁연구과제 목록

○ 2009년 ~2010년 이월과제 (단위: 천원)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예산액	과제 책임자	공동 연구자	발주기관
1	도미니카(공) 미성년자 임신방지 및 여성 보건환경 개선 2차 PMC 용역	'08.10.6~ '10.12.31	527,000	김영혜	김영택, 윤현주	한국국제 협력단('08년 이 월과제)
(-1)	도미니카(공)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개선 2차 PMC 용역 (11,665,000)	'10. 1~ '10. 2		김영혜	김영택, 윤현주	
(-2)	도미니카(공)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개선 2차 PMC 용역	'10. 6~ '10. 7		김영혜	김영택, 윤현주	
(-3)	도미니카(공)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개선 2차 PMC 용역 (11,665,000)	'10. 1~ '10. 2		김영혜	김영택, 윤현주	
(-4)	도미니카(공)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 개선 2차 PMC 용역	'10. 6~ '10. 7		김영혜	김영택, 윤현주	
2	2009 군대내 양성평등 현황 분석 및 확산 방안	'09.7.28~ '10.1.27	29,340	안상수	백영주, 문미경, 김인순	국방부
3	양육 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 선방안	'09.9.14~ '10.9.13	62,137	이미정	김혜영, 선보영	한국미혼모 지원네트워크 (KUMSN)
4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 과제	'09.11.16~ '10.4.15	48,500	김이선	마경희, 선보영	보건복지 가족부

○ 2010년 수행과제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예산액	과제 책임자	공동 연구자	발주기관
1	인하대 성평등 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09.12.9~ '10.8.31	36,046	김원홍	이수연, 김영택	인하대학교
2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진단 도구 개발 연구	'09.12.24~ '10.8.31	48,400	민무숙	김이선, 안상수	사회통합위원회
3	적극적 고용조치의 성과평가와 실효성 제고방안	'10.1.7~ '10.5.31	29,505	김태홍	강민정	노동부 고성과 작업장 혁신센터
4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연구	'10.1.20~ '10.4.20	10,000	김혜영	선보영	한국행정연구원
5	남녀고용평등 정책세미나 개최	'10.3.3~ '10.5.2	8,500	김태홍	김난주, 강민정	노동부
6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개발 연구	'10.3.4~ '10.6.3	19,940	유희정	최유진, 문희영	여성부
7	일.가정양립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통계 연계방안	'10.3.16~ '10.6.30	14,963	홍승아	전기택, 선보영	통계개발원
8	제2차 여성인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0.3.19~ '10.8.31	42,318	김종숙	신선미, 오은진, 강민정	여성부
9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역량증진을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10.3.22~ '10.10.31	50,000	정해숙	김이선	한국교육개발원
10	근무유형별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연구	'10.3.29~ '10.10.31	100,000	김태홍	홍승아, 주재선	노동부
11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전문화 표준화 연구	'10.4.12~ '10.10.9	29,700	박성정	최윤정	여성가족부
12	2010 동작구 주요사업 성별영향평가 연구	'10.4.13~ '10.10.15	18,800	김혜영	김원홍	동작구청
13	여성폭력관련 시설평가 연구	'10.4.15~ '10.11.11	170,363	변화순	이미정, 김동식, 정수연	여성가족부
14	국가비승인통계의 성별 분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10.4.23~ '10.12.19	43,200	전기택	문유경, 주재선, 선보영	여성가족부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예산액	과제 책임자	공동 연구자	발주기관
15	2010년 성별영향평가 지원강화 (109,000,000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종합분석 및 지원	'10.4.28~ '10.12.24	38,930	양애경	문유경, 김경희 김둘순, 송치선 남궁윤영	여성가족부
(-1)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및 개선방안	'10.4.28~ '10.12.24	30,070	문유경	양애경, 김경희 김둘순, 송치선 남궁윤영	여성가족부
(-2)	성별영향평가 제도개선 과제 발굴	'10.4.28~ '10.12.24	30,000	김경희	양애경, 문유경 김둘순, 송치선 남궁윤영	여성가족부
(-3)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기관 선정 지원	'10.4.28~ '10.12.24	10,000	양애경	문유경, 김경희 김둘순, 송치선	여성가족부
16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점검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	'10.4.30~ '10.9.27	30,000	민무숙	양인숙, 윤덕경	여성가족부
17	한국과 중국의 가족변화와 지원 정책	'10.4.9~ '10.11.30	50,000	김혜영	최인희, 김은지 선보영	경제인문사회연구 회
18	경력단절여성 적합 녹색직종 및 교육과정 개발	'10.5.6~ '11.1.1	60,909	오은진	민무숙, 김난주	여성가족부
19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방안연구	'10.5.6~ '10.11.30	29,900	변화순	윤덕경, 김영택 정수연	여성가족부
20	아동·청소년 가족정책의 패러 다임 변화와 발전방향	'10.5.1~ '10.9.30	20,000	홍승아	김혜영, 김은지	국회사무처
21	제3차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연구	'10.5.7~ '10.12.24	234,000	김종숙	이택면, 양인숙 김난주	여성가족부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예산액	과제 책임자	공동 연구자	발주기관
22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 내실화 방안: (130,909,090)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의 컨설팅 제고 방안	'10.5.18~ '10.12.14	35,000	김영옥	조선주, 마경희 김영숙, 이선행 김효선	여성가족부
(-1)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중 장기 계획 수립	'10.5.18~ '10.12.14	15,000	마경희	김영옥, 김효선	여성가족부
(-2)	성인지예산분석방법 및 도구개발	'10.5.18~ '10.12.14	25,000	마경희	김영숙, 김효선	여성가족부
(-3)	『여성정책기본계획 예산사업』 성 인지예산 시범작성	'10.5.18~ '10.12.14	30,000	김영옥	조선주, 이선행	여성가족부
(-4)	『2010년 성인지 결산서(안)』 시범 작성	'10.5.18~ '10.12.14	25,909	조선주	김영숙, 이선행	여성가족부
23	행정기관의 시간제 근무 시범운 영 실태조사 및 적합모델 발굴 연구	'10.5.25~ '10.12.17	52,727	양인숙	김태홍, 김승연	여성가족부
24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의 산 업별 기준을 산정방식 개발	'10.6.3~ '11.30	20,000	김태홍	이택면, 강민정	노사발전재단
25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관 련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	'10.6.4~ '10.10.3	49,500	김혜영	홍승아, 최인희 김은지, 선보영	여성가족부
26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와 양성평등 증진과의 연계성 연구	'10.6.10~ '10.10.9	19,800	이선주	변화순, 김경희	여성가족부
27	교과서의 성차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0.6.11~ '10.11.10	38,700	정해숙	최윤정	여성가족부
28	여성·아동 안전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10.6.17~ '10.12.16	29,500	안상수	변화순, 장미혜, 전기택, 김승연	여성가족부
29	2010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10.6.21~ '10.9.20	19,900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	여성가족부
3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10.6.22~ '10.9.20	19,800	김이선	민무숙	여성가족부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예산액	과제 책임자	공동 연구자	발주기관
31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0.6.28~ '10.12.25	69,727	정해숙	문유경, 박성정 김승연	여성가족부
32	2010년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확대 및 능력증진사업	'10.6.8~ '10.12.31	30,000	민무숙	신선미, 최윤정	교육과학기술부
33	개발NGO·시민단체의 여성개발 ODA사업의 현황과 과제(연구관련사업)	'10.6.9~ '10.9.30	7,000	김은경	한정연	한국국제협력단
34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0.6.21~ '10.11.20	25,000	김은지	정수연, 민현주 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	신기술시범사업 성과 및 성인지적 분석	'10.7.6~ '10.12.20	18,900	김돌순	김경희, 양애경 남궁윤영	농촌진흥청
36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 효과 분석 및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 방안	'10.7.21~ '10.12.14	29,500	조선주	유희정, 강민정, 오현경	보건복지부
37	2011년도 성인지에산서 분석 연구	'10.7.23~ '10.11.22	21,200	조선주	김영숙, 김효선	여성가족부
38	여성아동 피해보호 지원서비스 선진화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10.8.4~ '10.12.3	28,000	장미혜	윤덕경, 김영택	여성가족부
39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개발	'10.8.23~ '10.12.22	18,700	장미혜	김난주	사회통합위원회
40	산업·기술분야의 녹색성장을 위한 사회문화적 접근방안 연구	'10.8.17~ '10.11.30	30,000	이수연	신선미, 장미혜	에너지경제연구원
41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 실태조사	'10.8.31~ '10.12.27	86,818	김혜영	이미정, 신선미 장미혜, 선보영	여성가족부
43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과제 평가·정비 연구	'10.9.10~ '10.12.9	9,900	변화순	윤덕경, 김승연	여성가족부
44	사회서비스종사자 경력인정 방안에 대한 연구	'10.9.16~ '10.12.31	10,000	오은진		한국사회서비스관리센터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예산액	과제 책임자	공동 연구자	발주기관
45	201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분석	'10.9.27~ '10.12.28	14,000	전기택	김동식, 선보영	여성가족부
46	연수사업 성주류화를 위한 연수 생 강의교재개발	'10.11.12~ 12.25	20,000	이선주	김돌순	국제협력단
47	여성의 통행특성과 교통안전 확 보방안 조사	'10.10.25~ 12.28	20,000	이수연	안상수	한국교통연구원

○ 2011년 이월과제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예산액	과제 책임자	공동 연구자	발주기관
1	POSTECH 여자 졸업자의 경력 개발 실태조사	'10.9.1~ '11.2.20	35,000	민무숙	신선미, 박성정	포항공과대학교
2	미혼부의 책임강화 방안	'10.12.10~ 11.12.9	65,000	이미정	김혜영 (선임)	한국미혼모 지원네트워크

2011년 정책제안서

2011년 1월 인쇄

2011년 1월 발행

발행인 : 김 태 현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K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2-70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
TEL : 02-3156-7000 FAX : 02-3156-7271
홈페이지 · <http://www.kwpi.re.kr>